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결의

제품의 국가 등록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승인에 관하여

‘기술규제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및 ‘기술규제 분야 국가 관리 개선 조치에 관한’ 2024년 2월 27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PF-41호의 이행을 보장하고, 기술규제 분야의 국가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며,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해당 분야를 투명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아래의 규정들을 승인한다.

[이전 개정문 참조.](#)

(제1항 ‘a’호는 2025년 9월 2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결의](#) 제554호에 따라 삭제됨 —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5.09.02., 제09/25/554/0797호)

b) 본 결의 [부속서 2](#)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제품의 지식재산권 대상에 대한 권리의 조사 및 검증; 인증 업무 수행;

제품 인증 체계의 적용;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적합성 인증서 변경 절차;

[이전 개정문 참조.](#)

(제1항 ‘v’호는 2025년 12월 26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결의](#) 제831호에 따라 삭제됨 —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5.12.29., 제09/25/831/1227호)

g) 본 결의 [부속서 4](#)에 따른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인증 업무 수행;

인증 신청 접수 거부 사유;

적합성 인증서의 승인, 그 효력의 정지, 종료 및 취소; 인증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경영시스템 도입 및 교육 관련 업무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그 산정 절차;

d) 본 결의 [부속서 5](#)에 따른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절차에 관한 규정: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부적합 판정;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회수·폐기 및 해당 제품의 목록 관리;

제품 수입 재개 절차.

2. 적합성 확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음을 알린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소재의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를 등록한 경우(유효기간 무관), 해당 적합성 선언서를 근거로 제품을 24개월 동안 수입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적합성 선언서에 기재된 동일 제조자의 동일 유형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합성 선언 방식으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 제품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적합성은 제3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경제재정부 산하 관세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을 수행한다.

본 결의로 정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부처 간 통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내각 산하 세무위원회 및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본 결의로 승인된 절차에 근거하여 '단일 창구' 관세 정보 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4. 위험도가 높은 제품의 의무적 국가 등록 및 의무 인증, 위험도가 높지 않은 제품의 적합성 선언 절차의 실무 적용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의 일부 결의를 [부속서 6](#)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한다.

5.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자체적으로 채택한 규범적 법령을 1개월 이내에 본 결의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이전 개정문 참조.](#)

6.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규정 초안을 수립할 때, 해당 기술규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 부분이 본 결의 [부속서 1~3](#)으로 승인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항은 2024년 11월 1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결의](#) 제727호에 따라 개정됨 —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4.11.08., 제09/24/727/0905호)

7. 본 결의는 공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8. 본 결의의 이행 감독은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장 A.R. 주마나자로프에게 위임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총리 A. 아리포프

타슈켄트시,

2024년 8월 14일

제 502호

[이전 개정문 참조.](#)

(부속서 1은 2025년 9월 2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결의](#) 제554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함 —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5.09.02., 제09/25/554/0797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2024년 8월 14일자 [결의](#) 제502호의
부속서 2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1. 본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기술규제 분야의 규범 문서(이하 '기술규정')에서 정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정한다.

본 규정은 제품 또는 제품 요구사항과 관련된 설계(연구 포함), 제조, 건설, 설치, 조정, 사용, 보관, 운송, 판매 및 폐기(이하 '제품') 과정이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 체계를 포함한다.

본 규정의 요구사항은 의무 인증에 적용된다.

2. 의무 인증 대상 제품 유형의 목록은 정부 결의 및 기술규정에서 정한다.

제품 인증 체계·방법 및 절차는 기술규정 및 본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한다.

제품 인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제품 인증기관(이하 'MSO')이 그 인정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정부 결의 및 기술규정에서 정한 제품 유형은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 영토 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인증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수행한다.

공화국 영토로 반입되는 제품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관 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한 후에 인증한다. 이 경우 공화국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는 수입자가 '단일 창구' 관세 정보 시스템 및 대외무역거래 단일 전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3. 제품에 고유한 위험 요인 및 위험을 종합·분석하고, 기술규정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인증 체계를 고려하여 인증한다.

기술규정에는 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적합성 확인 체계,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질 수 있다.

제품에 대하여 이전에 채택된 기술규정에 인증 체계, 방법 및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새로 개발되는 기술규정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인증 체계, 방법 및 절차를 정한다.

4. 신청자에게 특정 제품 유형에 적합한 인증 체계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술규정에 복수의 인증 체계를 정할 수 있다.

5. 제품 인증 시 인정받은 MSO 가 여럿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에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주요 용어

6. 본 규정에서는 다음의 주요 용어가 사용된다.

인정받은 시험소 — 인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적합성 평가기관 단일 국가 등록부에 등재되어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그 법인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해당 법인의 구성 부서;

생산 평가 — MSO가 일괄(연속) 생산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할 때, 제조되는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지속적(안정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는 제품 인증의 한 단계;

단일 품목 — 날개 제품의 개별 단일 개체;

수입자 —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제조자(판매자)와 대외무역 거래를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공화국 영토에서 유통시키고 그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거주자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영시스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

제품 배치 —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화물 문서에 따른 동일 유형·동일 명칭·동일 표시의 제품 단위;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 인증된 제품이 인증 시점에 정해진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주기적·반복적 평가 절차;

판매자 — 제조자가 아니면서 계약에 따라 제품을 유통하며,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연속 생산 제품 — 단일 기술 문서에 따라 단일 기술공정으로 제조되어 공화국 영토에서 주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배치;

제조자의 자체 시험소 —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제조자의 구성 부서;

인증 체계 —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되는 일련의 행위;

화물 첨부 문서 — 제품의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하는 문서;

제조자의 지사 — 제조자의 법인이 아니며 해당 제조자의 소재지 외부에 위치하여 제조자의 모든 기능 또는 그 일부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

신청자 — 제조자, 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판매자 또는 수입자;

MXIK — 제품·상품 및 서비스 단일 전자 국가 카탈로그의 식별 코드.

제3장 인증 절차

7. 제품은 본 규정 [부속서 1](#)에 제시된 체계에 따라 인증한다. 이 경우 본 규정 [제19장](#)에 제시된 인증 체계를 적용한다.

인증 체계는 다음 절차를 순차적으로 포함한다.

a) 신청자 또는 그 공식 대리인이 제품 인증을 위해 본 규정 [제9항](#)에 규정된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제10항](#)에 제시된 문서를 첨부하여 MSO에 제출한다.

b) 제품 인증서 발급 시, 지식재산권 대상(상표,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이하 'IMO')에 대한 권리가 준수되었는지 조사 및 검증한다.

v) MSO가 신청서 및 첨부 문서를 검토·분석하고, 인증 업무의 수행 또는 인증 업무 수행 거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 다음,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한다(직접 또는 전자적 형식으로).

g) 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MSO가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도록 제품 샘플(개체)을 식별 및/또는 선정한다.

d) 인증 체계에 시험 및 측정 수행이 규정된 경우, MSO가 (필요 시) 계약에 따라 협력하는 인정받은 시험소(센터)(이하 'SL')를 참여시켜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한다. 신청자가 어떠한 사유로 참여한 SL에서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MSO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MSO는 자신이 협력하는 다른 SL을 참여시켜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한다.

e) 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SL이 선정된 제품 샘플의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한다.

j) 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MSO가 제품 유형 조사를 수행한다.

z) 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MSO가 제품 설계 조사를 수행한다.

i) 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MSO가 생산 현장 평가를 수행한다.

k) MSO가 제품 인증 업무 결과를 분석하고 적합성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l) MSO가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여 제공한다.

m)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등재한다.

n) 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신청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품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표시)한다.

o) 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MSO가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8. 인증 업무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MSO와 신청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제4장 신청서 제출

9. 신청자는 제품 인증을 위하여 본 규정 [부속서 3](#)에 제시된 양식의 신청서를 해당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MSO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한다.

a) MSO의 전체 명칭, 소재지(법인 주소)

b) 법인의 경우 — 신청자의 전체 명칭, 소재지(법인 주소) 및 활동 장소(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의 경우 — 성, 이름 및 부칭, 거주지 및 활동 장소(주소가 다른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법인 또는 공화국 법률에 따라 개인으로 국가 등록될 때 부여되는 개인번호 또는 회계번호(개인식별번호), 은행 계좌 정보,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v) 법인 또는 공화국 법률에 따라 MSO에 신청할 권한이 있는 조직(권한 부여 문서의 명칭 및 세부사항 명시)의 장의 직위, 성, 이름 및 부칭(있는 경우)

g) 법인의 경우 제조자 및 그 지사의 전체 명칭, 소재지(법인 주소) 및 제품 제조 장소 주소(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의 경우 성, 이름 및 부칭, 거주지 및 제품 제조 장소의 주소(주소가 다른 경우)

d) 다음을 포함한 제품 식별 정보:

제조자가 제품에 부여한 명칭 및 그 밖의 표현(있는 경우)(기술규정에 규정된 경우);

제품 명칭 및 (법률에서 정한 제품 유형별) MXIK 코드(기술규정에 규정된 경우)(있는 경우);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있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외경제활동 상품 분류에 따른 제품 코드(이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TIF TN 코드');

제품 제조의 근거가 된 문서의 표시와 명칭(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표준, 국제표준, 지역표준, 외국 표준, 또는 법률에서 정한 그 밖의 규범 문서);

인증 대상의 명칭(연속 생산, 배치 또는 단일 제품). 연속 생산의 경우 '연속 생산'이라고 기재한다. 제품 배치의 경우 배치 규모를, 단일 제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번호(있는 경우)를 기재한다.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단일 개체' 또는 '단일 품목'이라고 표시한다.

계약(공급 계약)의 세부사항(수량 명시)(단일 제품 또는 제품 배치의 경우) 및 화물 첨부 문서;

e) 신청자가 선택한 인증 체계;

j) 제품 적합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술규정 명칭;

z) 제조자가 자신의 명의로 다른 법인(공화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법률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포함)의 생산 현장(이하 '생산 현장')에 제품 제조(생산) 주문을 의뢰하는 경우, 주문 이행자의 전체 명칭, 소재지(법인 주소) 및 제품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주소;

i) 도입된 경영시스템을 확인하는 해당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정보(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y) 제품 배치의 고유 특성, 그 구성 및 규모(배치에 포함된 제품 단위 수)(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k) 단일 품목임을 정하는 정보(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10. 신청서에는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다.

제품의 기술(설계, 구조, 기술공정 및/또는 사용) 문서의 사본;

표준 목록(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이 국제 표준 및 지역 표준 목록에 포함된 표준의 전체가 아니라 그 개별 부분(장, 항)을 적용하여 보장되는 경우, 해당 표준의 개별 부분(장, 항)의 표시와 명칭). 그러한 표준(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표준 및 국제 표준)이 없는 경우, 지역 표준 또는 외국 표준을 자발적으로 적용(신청자가 적용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해당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이 보장된다.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는 자발적 적용 표준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해결책 및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필요한 경우);

제품 라벨링(제품에 관한 정보) 샘플, 수입 제품 인증의 경우 제품 라벨링 샘플(우즈베크어로 라벨링해야 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는 라틴 문자 기반 우즈베크 알파벳으로 표시한다)(비상업적 목적의 제품 제외);

제품 제조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사본(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표준, 국제 표준, 지역 표준, 외국 표준, 또는 그 밖의 문서);

인증 제품의 제조에 적용되고, 제조자가 도입한 경영시스템이 해당 경영시스템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인증서(이하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 사본(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제품의 복합 구성품, 재료, 부품 또는 구성요소의 적합성 인증서 사본(있는 경우);

공화국 영토로 공급된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보장하고, 해당 제품이 정해진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제조자(외국 제조자 포함)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경우);

IMO 등록 보호 문서(증명서 또는 특허) 또는 IMO 사용 라이선스(있는 경우);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그 밖의 문서(있는 경우);

수입되는 제품 배치 또는 단일(날개) 제품 유형에 대하여 그 규모를 명시한 계약서(공급 계약서) 및 화물 첨부 문서의 사본;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 사본(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제품에 대하여 수행된 조사에 관한 정보(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제조자 또는 SL이 수행한 시험 및 측정 보고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11. 외국어로 작성되어 신청서에 첨부되는 문서는 우즈베크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정해진 문서를 첨부하여 해당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MSO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되는 문서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제5장 지식재산권 대상에 대한 권리의 조사 및 검증

12. 제품 인증 과정에서 MSO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명칭, 포장 및 그 밖의 표시에 IMO에 대한 권리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및 검증을 수행한다.

해당 조사와 검증은 인증 시험을 위해 선정된 제품 샘플(라벨 및 포장)에 사용된 표지와 명칭 및 그 밖의 표시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무부의 '산업재산권 보호 포털'에 있는 기존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수행한다.

13. 해당 제품에 사용된 IMO 등록 보호 문서(증명서, 특허 또는 그 부속서)의 사본 또는 IMO 사용에 관한 계약의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및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다.

조사 및 검증에서 해당 제품에 IMO가 위법하게 사용된 것(위조)으로 확인된 경우, MSO는 인증 업무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사유와 함께 거부 결정을 통지한다.

이 경우 제품에 IMO가 위법하게 사용된 것(위조)을 확인한 MSO는 1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이하 '기술규제청') 및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인증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문서 일체의 검토·분석

14. 신청자가 인증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 일체(기술 문서 포함)는 제품을 식별하고 해당 문서가 제품 적합성 확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며, 해당 문서 중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및 분석된다.

MSO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를 다음의 관점에서 검토·분석한다.

a)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b)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문서 일체에서 자료가 완전하고 충분한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의 검토·분석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MSO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본 규정 [부속서 4](#)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인증 업무에 대한 비용 지불 계약(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없는 경우) 및 인증 수행 조건(샘플(개체) 선정 절차 및 시험·측정 프로그램 포함) 등을 명시하여 해당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의 검토·분석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MSO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신청서의 미비점을 명시하여 인증 업무 수행 거부 결정을 신청자에게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MSO가 인증 업무 수행 거부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거부의 근거가 된 미비점을 해소한 후 신청서 및 문서 일체를 해당 기관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제품의 식별, 샘플(개체) 채취, 시험 및 측정

15. 인증을 통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할 때, 시험 및 측정을 위해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의 샘플(개체)을 채취한다.

제품 샘플(개체) 선정, 시험 및 측정 시, 규칙 및 방법이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 목록에 포함된 표준,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지역 표준 또는 외국 표준(이하 '규칙 및 방법이 기재된 표준 목록')을 적용한다.

선정된 샘플(개체)은 제품의 설계, 구조 및 제조 기술 면에서 소비자(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

제품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 반입하기 전에 인증하는 경우, 공급되는 제품 배치에서 선정된 샘플은 그 채취 과정이 나타난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6. 선정된 제품 샘플(개체)은 나머지 제품과 분리하여 포장용기에 넣거나 선정 장소에서 봉인한다.

a) 제품 샘플(개체)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연속 생산 제품의 경우 —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완제품 창고, 임시 보관 창고, 세관 창고, 운송 수단의 적재 공간 또는 완제품 생산 라인에서;

b) 제품 배치의 경우 —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완제품 창고, 임시 보관 창고, 세관 창고 또는 보관 책임 창고, 운송 수단의 적재 공간 또는 완제품 생산 라인에서;

v) 단일 품목의 경우 — 제품 단위가 위치한 장소에서(또는 신청자가 제출한다).

17. 제품 샘플(개체)의 채취는 제품 식별과 동시에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제품의 특성이 해당 제품(제품 유형 또는 군)에 대한 기술규정 및 본 규정 [제10항](#)에 명시된 그 밖의 문서에서 제품을 기술규정의 기술규제 대상으로 당연히 결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정보상의 특징과 동일함을 확인한다.

제품 인증 시 제품의 식별 및 샘플(개체) 선정은 MSO가 신청자가 입회한 가운데 본 규정 [부속서 5](#)에 따라 샘플의 식별 및 샘플(개체) 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제품의 식별 및 샘플(개체) 선정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인증 업무 비용이 지불된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MSO가 현장에 나가 수행한다.

신청자와 합의한 경우, 제품의 샘플(개체) 선정은 MSO 또는 다른 MSO(계약에 따라) 및/또는 기술규정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정 범위에 해당 제품이 포함된 SL이 수행할 수 있다.

제품의 샘플(개체) 선정 결과는 제품 샘플(개체) 채취 장소와 일자, 제품 샘플(개체)의 보관 조건 및 선정된 제품의 균일성 등을 명시한 확인서에 기록한다. 제품 샘플(개체) 채취 확인서는 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 제품의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SL에 1일 이내에 송부한다(기술규정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 제품의 식별 표시에는 그 유형(종류)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다(기술규정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a)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 및 그 지사(생산 현장)의 경우 — 제조자의 전체 명칭, 그 소재지(법인 주소) 및 제품 제조 장소(주소가 다른 경우), 공화국 법률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의 경우 — 성, 이름 및 부칭(있는 경우), 거주지 및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주소(주소가 다른 경우)

b) 법인의 경우 — 신청자의 전체 명칭, 그 소재지(법인 주소) 및 활동 장소 주소(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의 경우 — 성, 이름 및 부칭(있는 경우), 거주지 및 활동 장소 주소(주소가 다른 경우)

v) 제품의 명칭 및 MXIK 코드(법률에서 정한 제품 유형별)(제품 유형 또는 제품군), 제품의 표시(기술규정에 규정된 경우) 및 제조자가 부여한 그 밖의 약정 표시(있는 경우);

g) 제품의 명칭 및 MXIK 코드(법률에서 정한 제품 유형별)(기술규정에 규정된 경우);

d) 제품 제조의 근거가 된 문서의 표시(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표준, 국제 표준, 지역 표준, 외국 표준 또는 그 밖의 문서)(있는 경우);

e) 제품의 용도, 제품 사용 시 권고사항, 해당 제품을 기술규정상 기술규제 대상인 제품에 당연히 포함시키는 근거가 되는 그 밖의 주요 특성;

j) 제품의 기술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식별 정보;

x) 바코드 또는 QR 코드(있는 경우);

i) 제조일자;

k) 보관 기간(기술규정에 규정된 경우), 사용(유효) 기간 또는 제품 수명(기술규정에 규정된 경우);

l) 배치 규모(배치의 경우);

m) 포장, 용기, 소비자 포장용기 단위의 공칭량(필요한 경우), 순중량 및 부피(필요한 경우);

n) 기술 문서 및/또는 운송 문서에 기재된 그 밖의 정보(있는 경우).

19. 제품의 식별 결과는 샘플 식별 및 샘플(개체) 채취 확인서에 반영한다.

샘플 식별 및 샘플(개체) 채취 확인서는:

제조되는 제품의 경우 2부로 작성하고 그중 1부는 신청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세관에 보관 중인 제품의 경우 3부로 작성하고 그중 2부는 세관 기관에 직접 제출한다.

제품의 식별 및 샘플 채취 시 제품의 표시(라벨링) 및 보관 조건을 점검한다.

사용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술 설비 및 그 구성품은 인정 범위에 해당 설비 또는 그 구성품이 포함된 MSO가 결론(서신)을 제출하며, 그 결론에 근거하여 기술 설비 및 그 구성품을 유통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기술 설비 및 그 구성품을 완전히 조립·조정한 후 인증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제품 시험 및 측정 업무가 기술규정에 명시된 경우, 시험 및 측정의 과정과 결과를 사진 및/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제품에 대하여 수행한 시험 및 측정의 결과는 시험 및 측정 보고서로 작성한다.

획득한 시험 및 측정 결과는 샘플 식별 및 샘플(개체) 채취 확인서에 기재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SL은 시험 및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제품의 시험 및 측정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MSO에도 추가로 보고서를 송부한다.

시험 및 측정 중 전체 또는 일부 손상된 제품의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 및 손상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확인서는 신청자(또는 그 대리인)가 입회한 가운데 본 규정 [부속서 6](#)에 따라 MSO가 작성한다.

인증 절차의 총 기간은 해당 유형 제품의 기술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총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20. 제품의 시험 및 측정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제품의 적합성 확인 업무는 중단 또는 종료된다.

21. 시정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시험 및 측정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부적합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 적합성 확인 업무를 중단하고, 시정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그러한 부적합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적합성 확인 업무를 종료하고 신청을 취소 처리한다.

22. MSO는 제품 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을 그 사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제8장 제품 유형 조사

23. 제품 유형 조사는 해당 제품 유형의 매개변수 및 특성이 유사 제품 제조 시 기술규정 및 기술 문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4. 제품 유형 조사는 다음에 대하여 수행한다(기술규정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 a) 위험 생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 b) 제품을 사용 장소에 설치(조립)하기 전에 전체 규모의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v) 신청자가 제품의 적합성 확인 시 자발적 적용을 통하여 기술규정 요구사항의 준수가 보장되는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혁신 제품 포함).

25. 제품 유형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조사한다.

- a) 계획된 생산을 위한 제품 샘플을 향후 모든 제품의 표준 형태로서 시험하는 방법
- b) 기술 문서의 분석, 제품 샘플 또는 제품의 중요 구성품을 시험하는 방법.

26. 제품 유형은 MSO가(필요한 경우, SL이 참여하여) 조사한다.

27. 기술규정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품 유형 조사 결과는 MSO가 결론의 형태로 작성한다.

제품 유형 조사에 관한 결론은 2부로 작성하고 그중 1부는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해당 결론의 양식은 MSO의 품질 매뉴얼 및 품질경영시스템 절차 문서로 정한다.

28. 제품의 적합성을 적합성 선언서의 형태로 확인하는 경우, 제품 유형 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때 MSO가 제품 유형에 대하여 정해진 단일 양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9장 제품 설계 조사

29. 제품 설계 조사는 제품 제조의 근거가 되는 기술 문서의 분석, 수행된 계산·조사·시험 결과의 분석 및 제품 도면·모델·시작품의 측정을 말한다.

30. 제품 설계 조사는 MSO가 제품의 설계·제조·사용 단계를 포함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정하는,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 문서를 검토함으로써 수행한다.

신청자는 제품 설계가 제품에 대하여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에 충분한 분량으로 기술 문서를 제출한다.

31. 제품 설계 조사 결과는 MSO가 결론의 형태로 작성한다.

해당 결론의 양식은 MSO의 품질 매뉴얼 및 품질경영시스템 절차 문서로 정한다.

제품 설계 조사에 관한 결론은 2부로 작성한다. 결론의 1부는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10장 생산 관리

32. 제조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이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본 장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 관리를 수행한다.

33. 제조자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술규정 및 기술 문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안정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원자재·재료 및 부품의 입고 관리; 제품 제조 기술의 공정 관리; 완제품의 인수(인수·인계) 관리;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관리; 장비의 관리;

측정 수단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기술 문서의 작성 및 보관 관리; 작업장의 환경 지표 관리;

인력 및 생산 안전 관리(있는 경우); 완제품의 주기적 관리.

또한 제조자에게 도입·인증된 경영시스템 활동이 있는 경우 그 안정성을 보장한다.

제11장 생산 평가

34. 생산 평가는 MSO가 연속 생산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할 때, 제조자에게 제조되는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지속적(안정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한다.

인증 체계에 따라, 생산 평가는 제품의 적합성을 인증 체계로 확인할 때 또는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수행할 때 실시한다.

생산 평가는 제품의 식별, 샘플(개체) 선정 및 시험·측정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35. 생산은 MSO의 명령으로 승인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명령에는 생산 평가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및 전문가) 및 생산 평가의 구체적 기한을 명시한다. 이 경우 생산 평가 기한은 영업일 기준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6. 생산 평가 위원회는 생산 규모, 기술공정, 제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5명을 초과하지 않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생산 및 제품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적격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 유형, 기술규정에서 정한 제품 요구사항 및 제조 기술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생산 평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37. 생산은 MSO의 장(장의 대리)이 개발·승인한 생산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제품 제조 장소(현장)에서 평가한다.

생산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제품의 기술(설계, 구조, 기술공정 및/또는 사용) 문서; 제품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 보유 여부;

생산 인프라(제조자 부지 내에 위치하며 생산 조직에 필요한 시설의 집합(생산 시설, 운송 차량 등));

장비(기술공정 설비 수단) 및 그 유지보수·수리; 관리·측정 및 시험 장비의 운용, 유지보수 및 수리;

제품이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측정 수단;

인증 제품(원자재, 재료, 부품)의 안전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한 제품의 입고 관리;

기술공정(특수 공정 포함)(기술규정에 해당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완제품의 기술규정에서 정한 특성의 관리, 관련된 인수 관리 및 주기적 시험;

완제품의 표시(라벨링)·보관·포장 및 보존 조건;

소비자와의 소통(해당 제조자의 제품에 관한 불만 및 분쟁 처리 포함);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의 관리;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시정 및 예방 조치.

38. 위원회는 생산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MSO의 품질 매뉴얼 및 품질경영시스템 절차 문서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 증빙 문서와 자료에 대한 참조 및 필요한 경우 확인된 부적합의 해소 기한을 명시한 확인서를 2부로 작성하고, 그중 1부는 제조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MSO에 제출한다.

이 경우 생산 평가에서 확인된 부적합의 해소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 평가 결과 확인서에는 제조되는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지속적(안정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제조자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 평가 확인서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 및 제조자가 서명한다. 이때 제조자가 생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확인서에 기재할 수 있다.

MSO는 생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제품 인증 업무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신청자가 확인된 부적합 및 그 원인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인증 업무 중단 결정을 내린다.

확인된 부적합을 시정 조치로 해소할 수 없거나 시정 조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 업무 종료 결정을 내린다.

인증 업무 중단 결정을 내리는 경우, MSO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인증 업무의 재개를 위하여:

신청자는 확인된 부적합 및 그 원인의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이를

MSO에 통지한다.

MSO는 신청자가 이행한 시정 조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인증 업무 재개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확인된 부적합 및 그 원인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인증 업무는 종료된다.

제품이 제조자의 여러 지사에서 제조되는 경우, 제조자가 모든 지사에서 제조된 제품의 안전 및 생산의 안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분량의 제품을 제조하는 지사에서 생산 평가를 수행한다.

생산 평가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MSO는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계획의 범위에서 제조자의 다른 생산 지사에 대한 생산 평가의 후속 일정을 작성하고(평가 일자 명시) 제조자와 합의한다.

39. 이전에 인증된 제품과 구조(구성, 배합) 또는 제조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신제품의 인증 신청이 MSO에 접수된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MSO의 결정에 따라 이전 생산 평가 분석 결과를 해당 제품에 부분적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생산 평가를 수행하고 생산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 MSO에 의하여 제품 인증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제조자가 제품 구조(구성, 배합) 또는 제조 기술에 가한 변경이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생산 평가를 수행하고 작성한 생산 평가 결과 확인서 또는 이전에 인증된 제품의 주기적 평가 수행 및 등록에 관한 확인서가 작성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장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

40. MSO는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일체 및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서(시험 및 측정 보고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생산 평가 확인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제품 설계 조사 결론(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제품 유형 조사 결론(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를 분석한다.

긍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온 경우, MSO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본 규정 [부속서 7](#)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 결정을 내린다.

41. 제품 인증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MSO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 거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청자, 기술규제청, 세무위원회, 관세위원회 및 관련 부처·기관에 결정 채택 당일에 직접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42.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는 본 규정 [부속서 8](#)에 따라 단일 전자 형식으로 발급된다.

적합성 인증서는 MSO의 장이 전자서명으로 승인한다. 적합성 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된다.

제품 배치의 경우 — 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보증기간 동안;

연속 생산 제품의 경우 — 3년 기간 동안.

이 경우 연속 생산 제품에 대하여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에 제조된 제품은 인증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인증을 받지 않는다.

제품이 인증되었음을 확인하는 근거는 적합성 마크 및 제품에 첨부되어 사용 문서에 기재된 제조일자이다.

신청자(적합성 인증서의 소유자)는 적합성 인증서의 사용 권리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권리를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3.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보다 먼저 만료되는 경우, 인증 제품의 제조자는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44. 기술규정의 기술규제 대상인 연속 생산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는 선정되어 시험 및 측정을 거친 샘플(개체)이 제조된 날부터 해당 제품에 적용된다. 이 경우, 선정되어 시험 및 측정을 거친 샘플(개체)의 제조일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적합성 인증서의 '특기사항' 항목에 기재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서는 그 발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작성되어 국가 등록부에 등록된다.

작성된 적합성 인증서 및 MSO와 신청자 간에 체결된 합의에 근거하여, 적합성 인증서의 소유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합성 마크로 제품을 표시(라벨링)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는 1회 발급되며, 해당 제품의 적합성 재인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제13장 단일 국가 등록부에 적합성 인증서 정보 등재

45.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발생 시작일은 적합성 인증서가 적합성 인증서 국가 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계산한다.

46. 적합성 인증서 국가 등록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한다.

47. 인증 과정에서 발급된 다음의 문서는 발급 당일에 MSO가 해당 전자 시스템에 입력한다.

신청에 대한 결정;

IMO에 관한 정보;

샘플 선정 및 식별 확인서;

시험 보고서;

생산 평가 확인서;

적합성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정;

샘플의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 적합성 인증서.

제14장 적합성 인증서의 변경

48. 적합성 인증서 및/또는 그 부속서(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는 다음의 경우에 본 규정 제7항 ['a'~'i'호](#)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및 그 부속서에 오류·오기가 있는 경우;

제조자의 조직·법적 형태가 변경된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TIF TN 코드가 변경된 경우(해당 코드가 MSO의 인정 범위에 있는 경우).

49. 본 규정 [제48항](#)에 규정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MSO에 적합성 인증서의 변경에

관하여 적합성 인증서 및/또는 그 부속서 변경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신청서 및 본 조항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문서를 검토하고, 적합성 인증서 변경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적합성 인증서의 소유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50. 본 규정 [제48항](#)에 규정된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서 및 국가 등록부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전자 시스템에서,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변경된 적합성 인증서에 '변경됨'이라고 표시한다.

51. 본 규정 [제48항](#)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 본 규정 [제7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적합성 인증서의 소유자가 본 규정 [제7항](#)에 규정된 절차의 수행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MSO는 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 본 규정 제39항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를 수행한다.

제15장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또는 종료

52. MSO는 다음의 경우에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a) 제품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및/또는 건강, 재산, 환경, 동물 및/또는 식물계의 안전에 위협이 야기되는 경우;

b)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v)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있는 경우;

g)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d) 제품의 인증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구성) 또는 그 제조(생산) 기술에 변경이 가해졌으나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그러한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그러한 변경을 확인하는 문서(구조 문서, 도면, 사양)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e)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j)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에게 유효한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가 없는 경우(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z) 기술규제청의 기술규제 분야 감독 기관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효력 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종료한다:

a) 제품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및/또는 건강, 재산, 환경, 동물 및/또는 식물계의 안전에 위협이 야기됨이 확인된 경우;

b) 재평가에서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v)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재차 확인된 경우;

g) 제품의 인증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구성) 또는 그 제조(생산) 기술에 변경이 가해졌으나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그러한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그러한 변경을 확인하는 문서(구조 문서, 도면, 사양)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d)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e)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보유한 유효한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j)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 및/또는 제조 조직이 해산되거나 인증서 소유자의 발의로 제품의 연속 생산이 중단된 경우;

z)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이 변경·효력 종료 또는 폐지된 경우;

i) 기술규제청의 기술규제 분야 감독 기관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효력 종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3. 기술규제청은 법률 규범 위반이 있을 시 제품에 대하여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54.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와 합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마련 및 이행 기간 중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효력 정지 결정은,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시정 작업을 수행하여 확인된 미비점을 해소하고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채택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은 종료된다.

55.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a)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적합성 마크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b)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입력한다.

v)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미비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다.

g)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의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한다.

56.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a)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수량을 식별·확인한다.

b) 확인된 미비점의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보장한다.

v)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적용)의 위험을 통지한다.

g) MSO에 시정조치 이행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57.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a)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재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적합성 마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b) 적합성 인증서 재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입력한다.

58.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확인된 미비점 및 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용(적용)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적합성 인증서의 종료 결정을 채택한다.

59. 제조된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그 효력의 정지(재개) 또는 종료를 발의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재개) 또는 종료의 근거가 된 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60. MSO는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재개)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61. 제품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효력이 정지된 적합성 인증서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MSO는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 후 적합성 인증서 재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62. MSO는 국가 등록부의 관련 항목에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재개) 또는 종료를 입력하도록 기술규제청에 정보를 제출한다.

63.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은 국가 등록부에 해당 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정지(재개) 또는 종료된다.

제16장 제품 구조(구성)의 변경

64.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의 구조(구성) 또는 그 제조 기술에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가해진 경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기 30일 전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가해진 변경을 확인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MSO는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제출한 문서의 분석에 근거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품 샘플(개체)의 시험·측정 및/또는 생산 평가(인증 체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평가가 규정된 경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MSO의 결정은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된다.

65. MSO가 제품 샘플(개체)에 대한 시험·측정 및/또는 생산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후에만 구조(구성) 또는 제조 기술에 변경이 가해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66. MSO가 제품 샘플(개체)의 시험·측정 및/또는 생산 평가(인증 체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평가가 규정된 경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와 MSO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수행한 업무 결과에 따라 MSO는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부적합)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된다.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MSO는 해당 제품을 유효한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하여 유통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제품이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MSO는 제품을 유효한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하여 유통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MSO와 합의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67.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MSO는 적합성 인증서를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적합성 인증서의 소유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된다.

68. MSO가 본 규정 [제65항~제67항](#)에 규정된 활동의 결과에 근거하여 발급한 문서는 증빙 문서 일체에 포함되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이를 국가 감독 기관(요청 시) 및 법률에 따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제출한다.

제17장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69.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란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제품이 기술규정에서 정하고 인증

시 확인된 요구사항에 계속 적합한지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적 평가를 말한다.

70. 인증 제품은(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가 인증서의 전체 유효기간 동안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여러 방법으로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 a) 인증 제품 샘플(개체)의 식별, 시험 및 측정;
- b) 생산 평가.

최초의 주기적 평가는 제품이 인증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행한다. 이후 주기적 평가는 MSO장이 승인하는 주기적 평가 계획·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만 직전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수행한다.

71. 경영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인증 체계의 경우, 인증 제품은 MSO가 제품 샘플(개체)의 시험 및 측정을 통하여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72. 인증 제품은 MSO가 SL을 참여시켜(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73. 인증 제품은 MSO가 개발·승인한 인증 제품 주기적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74. 기술규정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는 다음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 a)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 b)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위한 전문가 그룹(위원회) 구성;
- v)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승인;
- g) 인증 제품에 관한 정보의 지속적 분석;
- d)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따른 인증 제품 시험 프로그램의 개발;
- e) 제품의 식별;
- j) 제품 샘플(개체)의 채취 및 그에 대한 시험 수행;
- z) 생산 평가(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i)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에 따른 확인서 작성;
- k)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의 채택.

75.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76. 인증 제품은 인증 형태에 따라 제품 샘플(개체)의 식별, 그에 대한 시험 및 측정 수행, 생산 평가를 통하여 주기적 평가를 받는다.

77. 인증 제품의 정기 주기적 평가 중 제품은 본 규정 제4장에 따라 식별하고 그로부터 샘플(개체)을 채취한다.

78.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기간 중 생산 평가는 본 규정 제9장에 따라 수행한다.

79. 인증 제품의 제조가 중단되거나 시험 및 측정 수행을 위한 제품 샘플(개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이를 MSO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MSO는 접수한 통지에 근거하여 인증 제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기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정지하는 결정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채택하고, 이를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 기술규제청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

80.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는 해당 확인서로 작성하고 그중 1부는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에게 송부한다.

81.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MSO는 다음 결정 중 하나를 채택한다.

- a)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승인;
- b)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 v)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종료.

82.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승인 결정은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 채택하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는다.

83. 다음의 경우에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다.

제조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조자가 주기적 평가 수행 업무에 대한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기적 평가를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주기적 평가 수행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MSO가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MSO와 합의하여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부적합 원인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 기한을 정한다.

84.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부적합이 실제로 해소되었음을 MSO가 확인한 경우,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된다.

85. 다음의 경우에 MSO는 적합성 인증서 효력 종료 결정을 내린다.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가 시정조치에 기재된 부적합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험 결과 인증 제품이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제조 장소가 변경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제품(상품) 기술규정이 변경된 경우;

주기적 평가 과정에서 시정할 수 없는 미비점이 확인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종료 결정을 내리는 경우, MSO는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 기술규제청 및 관련 기관에 해당 결정을 통지한다.

86. MSO의 적합성 인증서 효력 정지, 재개 또는 종료에 관한 정보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서의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국가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기술규제청에, 참고용으로 세무 및 세관 기관에, 그리고 언론 및 관련 부처·기관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해당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한다.

87. 인증 제품은 소비자 및/또는 국가 감독 기관으로부터 제품 안전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정보가 접수된 경우 MSO가 수시로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위하여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MSO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 마지막 주기적 평가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평가 수행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8장 적합성 인증 발급 근거 문서의 작성 및 보관

88. MSO가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입력한 후, MSO와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는 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는 다음의 문서 일체를 전자 시스템으로 작성한다(기술규정에 다른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a) 제품의 기술 문서(설계, 구조, 기술공정, 사용 문서 및/또는 기술 사양의 사본);
- b) 표준 세트에 포함된 표준 목록(명칭과 표시, 기술규정 요구사항의 준수가 표준 전체가 아니라 개별 부분·장 및 항의 적용을 통하여 보장되는 경우 해당 부분·장 및 항)(신청자가 적용하는 경우);
- v) 기술규정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자발적 적용 표준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해결책 및 위험 평가 결과의 설명;
- g) 제품 샘플(개체)의 식별 및/또는 선정에 관한 확인서;
- d)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및 측정 보고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및 해당 사진 및/또는 동영상(기술규정에 규정된 경우);
- e)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 사본(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j)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 구성요소, 원자재, 재료 또는 부품의 적합성 인증서 또는 시험·측정 보고서(있는 경우);
- z) 계약(합의) 및 화물 첨부 문서의 사본(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i) 공화국 영토로 공급된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보장하고, 해당 제품이 정해진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제조자(외국 제조자 포함)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경우);
- k) 생산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l) 신청자가 제출한, 제품의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는 그 밖의 문서;
- m) 적합성 인증서;
- n) 신청자가 법률에 따라 국가 등록될 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에게 부여된 등록 또는 회계(개인, 식별) 번호에 관한 정보.

89. 전자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문서 일체는 인쇄된 형태로 본 규정 제9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MSO에서 보관해야 한다.

90. 적합성 인증서 및 제품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서 일체의 보관 기간은 기술규정에서 정한다.

91. 적합성 인증서 및 해당 인증서의 발급 근거가 된 문서 일체의 보관 기간이 기술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최소 1년 동안 MSO에서 보관한다.

92. 적합성 인증서 문서 일체는 공화국 내 국가 감독 수행 및 기술규정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감독 기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시 신청자 및/또는 MSO가 제출한다.

제19장 제품 인증 체계의 적용

93. 제품은 아래의 인증 체계에 근거하여, 본 규정 부속서 2에 명시된 행위의 수행에 기초하여 인증된다.

1S 체계 — 연속 생산 제품의 인증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이며 인증 제품을 적합성 마크로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2S 체계 — 제조자에게 경영시스템 인증서가 있는 연속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이며 인증 제품을 적합성 마크로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3S 체계 — 제품 배치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 또는 판매자(수입자)이며 인증 제품을 적합성 마크로(수입 제품은 신청자에게 편리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제품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 반입되기 전에 이 체계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대상 제품에서 샘플 선정 및 해당 샘플을 인증기관에 인도하는 것은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4S 체계 — 단일(날개) 품목에 적용한다(단, 기술규정에서 정한 시험 및 측정 수행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 또는 판매자(수입자)이다.

5S 체계 — 완제품의 시험 및 측정으로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연속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이며 인증 제품을 적합성 마크로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6S 체계 — 완제품의 시험 및 측정으로 기술규정 요구사항 적합성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고 제조자가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한 연속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이며 인증 제품을 적합성 마크로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7S 체계 — 연속 생산용 제품을 위한 제품 변형의 출시가 계획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이며 인증 제품을 적합성 마크로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8S 체계 — 연속 생산용 제품 변형의 출시가 계획되고 제조자가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한 연속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이며 인증 제품을 적합성 마크로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9S 체계 — 공화국 영토 내 기업의 설비 구축을 위한 단일(날개) 품목에 적용한다. 이 체계에 따른 인증은 기술 문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조자(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 또는 판매자(수입자)이다.

제20장 정보 제공

94. MSO는 발급·승인·효력 정지 및 종료된 인증서와 인증서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기록·관리하며, 그에 관한 정보를 매월 기술규제청에 제출한다. MSO는 자신의 활동 및 발급된 인증서를 이해관계 기관에 통지한다.

95. 기술규제청은 다음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의 국가 등록부; 효력이 정지 및 종료된 적합성 인증서.

제21장 이의신청 심사

96.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기술규제청의 이의신청위원회에 또는 직접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97. 기술규제청의 이의신청위원회는 MSO 및 SL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심사한다.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기술규제청장의 명령으로 승인한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채택된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8. 이해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술규제청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2장 최종 규정

99. 기술규제청 또는 기술규제 분야 감독 기관은 MSO에 적합성 인증서 및 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문서 일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규제청은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MSO가 발급하였거나 발급 중인 적합성 인증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MSO를 전자 시스템에서 차단할 권한을 가진다.

100. 적합성 인증서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 및 본 규정 요구사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MSO가 진다.

101.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1

제품 인증

방식

단계	주체	조치	이행 기한
1단계	신청자	제품 인증을 위한 문서 일체를 작성한다. 인증기관에 제품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2단계	인증기관	1. 다음과 같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문서 및 정보의 완전성을 검토한다: a)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제품 인증 결정을 내리고 계약을 체결한다. b) 문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문서를 반환한다. 2. 계약에 따라 제품 인증 수수료가 지불되면, 제품을 식별하고 샘플을 채취하며 IMO에 대한 권리를 조사·검증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3. 제품 설계 조사를 수행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4. 제품 유형 조사를 수행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5. 식별 및 샘플 채취, IMO 또는 제품 설계·유형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해소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6. 식별 및 샘플 채취, IMO 또는 제품 설계 조사 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개월 이내

단계	주체	조치	이행 기한
		제품 유형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록 업무를 중단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부적합 해소 정보 및 증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증 업무를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보낸다.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3단계	인증기관	식별 및 샘플 채취 과정에서 미비점이 확인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미비점이 해소된 경우, 선정된 샘플을 확인서와 함께 인정받은 시험소에 송부한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시험소	선정된 샘플을 기술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획득한 시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시험 소요 기간에 따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인증기관	생산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생산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해소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확인된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중단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미비점 해소 정보·증빙이 제출된 경우, 업무 중단 또는 계속을 결정한다.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증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다.	1개월 이내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신청자	생산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을 시정하고 해당 정보를 증빙 문서와 함께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1개월 이내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4단계	인증기관	식별 및 샘플 채취 확인서, 제품 설계·유형 조사 결론, 시험 보고서, 생산 평가 확인서 및 제출된 문서 일체에 근거하여 적합성 인증서 발급 결정을 내린다. 시험 및 측정 중 전체 또는 일부 손상된 제품의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 및 손상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긍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고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한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2

제품 인증 체계

체계 번호	제품의 식별	제품의 샘플(개체) 선정	제품의 IMO에 대 한 권리 조사 및 검증	제품의 시험 및 측정 수행	제품 설계 조사	제품 유형 조사	생산 관리 (신청자에 의한)	생산 평가 (인증기관 에 의한)	인증 제품 의 주기적 평가
1S	+	+	+	+			+	+	+
2S	+	+	+	+			+	+	+
3S	+	+*	+	+*					
4S	+		+						
5S	+		+		+		+	+	+
6S	+		+			+	+	+	+
7S	+		+			+	+		+
8S	+		+			+	+		+
9S	+		+						

비고:

* 기술규정에서 제품 샘플(개체)의 시험 및 측정 결과를 동종 제품의 이후 배치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제품 인증기관은 제품 배치가 이전에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별을 수행한다. 제품 인증기관이 제품 배치가 이전에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과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 해당 배치의 샘플 채취 및 시험·측정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 및 측정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기술규정에 따라 정한다.

** 기술규정에서 단일 품목 샘플(개체)의 시험 및 측정 결과를 동종 제품의 이후 단일 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제품 인증기관은 단일 품목이 이전에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별을 수행한다. 제품 인증기관이 단일 품목이 이전에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과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 시험 및 측정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 및 측정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기술규정에 따라 정한다.

단일 품목의 시험 및 측정은 인정받은 시험소(센터)에서 수행한다(기술규정에서 단일 품목의 시험 및 측정 결과를 동종 제품의 단일 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3

(인증기관의 명칭)

(인증기관의 주소)

제품 인증 신청서

(신청자의 명칭(제조자, 공급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성명))

(신청자의 주소)

상기 신청자 _____ 을(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대표자의 성명)

(제품의 명칭, 유형, TIF TN 코드, 연속 생산 또는 배치 생산, 단일 생산의 경우 각 제품에 관한 정보)
는

_____에 근거하여 제조되며,

(제조자 문서의 명칭)

_____의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규범 문서의 명칭 및 번호)

이에 해당 제품을 명시된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 인증 체계에 근거하여 인증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증 체계 번호)

추가 정보

(결론 및 그 밖의 문서 보유 여부를 기재)

신청자

_____ (서명)

_____ (성명)

일자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부속서 4

(인증기관의 명칭)

(인증기관의 주소)

“승인함”

인증기관장

(서명)

(성명)

20__년__월__일

인장

인증 신청에 관한 결정

20__년__월__일 제__호

의 인증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제조사, 공급자의 명칭)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제품 명칭, TIF TN 코드)

1. 인증 체계

(인증 체계 번호)

2. 인증 시험 수행 기관

(인정받은 시험소의 명칭)

(주소)

3. 인증 수행의 근거가 되는 요구사항

(규범 문서의 명칭 및 표시)

4. 생산 평가 수행 기업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 평가 유형)

5. 업무 비용 지불 방식

(사업 계약, 요율 및 그 밖의 지불 방식)

6. 인증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문서.

(필수 제출 문서)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5

(앞면)

샘플의 식별 및 선정 확인서

20 __년 __월 __일

제조자(신청자)의 명칭

샘플이 채취된 조직의 명칭 및 주소

제품 유형의 명칭 및 MXIK 코드

(법률에서 정한 제품 유형별)

측정 단위

배치 규모

배치 외관 검사 결과

(포장, 라벨링 상태)

제조일자

수령한 샘플 수

(단위 포장 상태)

(시험용)

(대조 샘플용)

샘플 채취 목적: 규범 문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의 안전 지표 시험용

샘플 채취 장소 및 일자

서명:

제조자측

(신청자측)

인증기관측

세관 초소 검사관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뒷면)

제품 식별:

명칭 (상표, 모델, 유형, 등급(있는 경우))

제조자 (국가 및 기업)		
포장 및 라벨링 정보		
용도 / 목적		
주요 특성		
보관 조건		
제조일자		
보관 기간		
추가 정보 (있는 경우)		
서명:		
인증기관		
	(서명)	(성명)
세관 초소 검사관		
	(서명)	(성명)
제조자 (신청자)		
	(서명)	(성명)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6

제품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

20__년 __월 __일

(법인 및 개인의 명칭)		
(신청서 일자 및 번호)		
본 확인서는 20__년 __월 __일자 제_____호 샘플 선정 확인서에 따라 선정된 제품 샘플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중 전체 손상됨;		
시험 중 파괴되지 않았거나 일부 손상되어 신청자에게 반환됨.		
제조자 (신청자)		
	(서명)	(성명)
인증기관		
	(서명)	(성명)

(인증기관의 명칭)

(인증기관의 주소)

“승인함”

인증기관장

(서명)

(성명)

20__년 __월 __일

인장

인증 결과에 관한 결정

20__년 __월 __일 제__호

- 인증 대상 제품의 시험 보고서 분석.
- 생산 평가 결론(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문서의 완전성에 근거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 / 거부(해당 사항에 밑줄 표시)

(제품 명칭)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거부 사유	
전문가	

(서명)

(성명)

(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국가 등록부 번호)

적합성 인증서

제_____호 20____년____월____일부터

(국가 적합성 마크)

국가 등록부에 제_____호로 등록됨

유효기간

20____년____월____일까지

TIF TN 코드

(참고용)

(조직 명칭, 제조국)

본 인증서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게 식별된 제품이 규범 문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명칭, 유형, 종류, 모델)

(수량 또는 연속 생산)

인증 체계:

신청자

(제조자, 판매자):

(해당 사항에 밑줄 표시)

(실제 주소 및 법적 주소)

본 인증서는 다음을 근거로 발급되었다.

a) 문서

b) 샘플 시험

v) 생산 검사 증명서

정기적으로 검사 관리를 실시합니다.

특기사항:

적합성 마크 부착:

인증기관장

(서명)

(성명)

전문가

(서명)

(성명)

이전 개정문 참조.

(부속서 3은 2025년 12월 26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결의 제831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함 —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5.12.29., 제09/25/831/1227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2024년 8월 14일자 결의 제502호의
부속서 4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1. 본 규정은 '기술규제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및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를 제정한다.

2. 경영시스템 인증의 체계, 방법 및 절차는 기술규제 분야의 규범 문서 및 본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한다.

경영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함께,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규율하는 일련의 국제표준에 규정된 요구사항, 특정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정해진 개별 규칙, 경영시스템 인증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인정한 원칙을 고려한다.

3. 경영시스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하 'MTSO')이 그 인정 범위 내에서 인증한다.

경영시스템 인증 시 인정받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여럿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에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주요 용어

4. 본 규정에서는 다음의 주요 용어가 사용된다.

신청자 — 경영시스템 인증을 신청하는 법인;

정보시스템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하고 전자 등록부를 유지하는 정보시스템;

경영시스템 인증기관(MTSO) —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거주자로서,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

경영시스템 인증 — 경영시스템이 인증 체계에 따라 국제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업무;

적합성 인증서 —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정해진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할 목적으로 인증 체계의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문서;

감독 심사 — 정해진 요구사항의 이행 수준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록을 취득하고 증거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독립적이며 문서화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과정.

제3장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5. 경영시스템 인증(이하 '인증') 단계는 다음과 같다.

- a) 특정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정해진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신청서 제출
- b) 인증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 및 의사 결정
- v) 인증을 위한 계약 체결
- g) 충분한 권한을 갖춘 인증 심사팀 구성
- d) 정해진 단계에서 경영시스템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
- e) 적합성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에 관한 의사 결정
- j) 정보시스템에 적합성 인증서 등록.

6. 신청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MTSO가 신청서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신청서 제출

7. 신청자는 국제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본 규정 [부속서 4](#)에 따른 신청서 및 [제9항](#)의 첨부 정보를 MTSO에 제출한다.

8. 신청자는 인증 신청서 및 그에 필요한 첨부 문서와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9. 인증을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한다.

- a) 경영시스템으로 포괄되는 인증 대상 분야(인증 분야)
- b) 경영시스템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에 대한 참조
- v) 신청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

g) 인증으로 포괄하려는 신청자의 상시 및/또는 임시 활동 장소의 수, 해당 장소의 전체 명칭·주소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설명

d) 신청자가 도급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활동(공정)의 설명

e) 신청자의 활동에 관한 공정 및 그에 관련된 인적·기술적 자원의 세부사항

j) 경영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

z) 이전 인증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추가 정보 및/또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 인증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제5장 인증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문서 일체의 검토 절차

11. MTSO는 제출된 신청서 및 정보를 검토·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인증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에게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채택된 결정 또는 사유를 갖춘 거부 결정을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해당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

12. 인증 신청 수락 거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 규정 제9항에 기재된 정보가 완전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증 신청서에 첨부된 문서 및 정보가 위조되었거나 부정확함이 확인된 경우;

MTSO에 인증을 위하여 요청된 인증 분야의 적격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인증 신청서가 본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13. 인증 신청의 수락이 거부된 경우, 문서는 신청자에게 반환된다.

14. 신청자는 기재된 거부 사유를 해소한 후 다시 인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15. 인증 신청이 수락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MTSO와 신청자 간에 인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16. 경영시스템 인증·도입 및 교육 업무에 대한 비용은 본 규정 부속서 2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불한다.

17. 경영시스템 인증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신청자가 인증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업무 비용은 인증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불해야 한다.

18. 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신청자가 컨설턴트를 공개 입찰에 근거하여 참여시키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총 비용은 실제 지출을 고려하여 기준계산액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장 충분한 권한(자격 수준)을 갖춘 인증 심사팀의 구성 절차

19. 인증 업무 비용의 1차 지불이 이루어진 후 MTSO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다만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 인증을 위한 심사원 그룹을 구성한다.

20. MTSO는 본 규정 제9항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하여, 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심사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인증한다.

21. MTSO의 심사 프로그램에는 경영시스템의 최초 인증 시 제1단계 및 제2단계 심사에서, 그리고 적합성 인증서 유효기간 중 수행하는 감독 및 재인증 심사에서 수행하는 조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2. MTSO가 경영시스템 심사를 계획하고 심사 시간을 산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MTSO가 심사 과정에서 포괄하는 경영시스템의 복잡성 및 통합 수준;

신청자의 활동 성과(예: 활동 효과 지표(KPI), 불만 등);

인증으로 포괄되는 활동 장소의 수, 공정, 인적·기술적 자원의 규모;

경영시스템 평가를 위하여 경영시스템 인증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한 기준;

법률에 규정된 개별 요구사항.

23. 인증 심사팀의 구성, 인증 기한 및 장소는 MTSO가 신청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24. MTSO는 신청자와 체결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팀 구성에 참관인, 인정기관 평가자 및 그 밖의 참가자가 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제7장 정해진 단계에서의 경영시스템 심사 수행 및 결과 보고

25. 경영시스템이 규범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정해진 단계에서 심사를 수행한다.

26. 수행된 제1단계 심사의 결과로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경영시스템 문서의 분석, 심사 목적 달성 여부 및 신청자의 다음 단계 심사 준비 수준에 관한 결론 및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규율하는 해당 국제표준군에 규정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인증에 중요한 그 밖의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27. 경영시스템의 제2단계 심사는 인증으로 포괄하려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그러한 장소로는 신청자의 상시 및/또는 임시 활동 장소, 지사, 가상 목적의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

28. 경영시스템의 제2단계 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표준군에서 요구하는 정보 및 심사 결론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한다.

29. 보고서에는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특정 경영시스템의 범위에서 법령에 규정된 요구사항의 이행 상태(해당하는 경우);

도입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의 요구사항 적합성에 관한 결론;

영업일 기준 25일을 넘지 않는 부적합 해소 기한(부적합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보고서에는 인증에 중요한 그 밖의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30. 경영시스템이 규범적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시스템 심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제출한다.

제8장 인증 결정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합성 인증서 등록

31. 수행된 인증 결과에 따라 MTSO는 적합성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32. 감독 심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 적합성 인증서 승인 결정을 내린다.
33. 적합성 인증서 발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하여 국가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34. MTSO가 동시에 여러 경영시스템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된 각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별도의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다.
35. MTSO는 자신이 인증한 경영시스템의 인증 상태(인증 분야 확대·축소·확인, 효력 정지·종료·및 취소)를 기록하는 공개 정보 자원을 유지하고 여기에 기재된 정보의 최신성을 보장한다.
36. 적합성 인증서는 국가 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37.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는 본 규정 [부속서 1](#)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한다.
38. MTSO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작성된 모든 형태의 적합성 인증서, 인증 마크 및 인증된 경영시스템을 참조하는 정보를 국제표준에서 허용된 경우에 반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 적합성 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이를 발급한 MTSO가 책임을 진다.
40. 이전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인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경영시스템 문서의 분석 및 그 결과 보고서 작성과 함께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수행한다.

제9장 적합성 인증서 발급 거부

41. 적합성 인증서 발급 거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경영시스템 문서의 분석 또는 경영시스템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이 해당 보고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인증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 경영시스템이 본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42. MTSO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서 발급 거부 결정을 내리고,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인 계정으로 이를 통지한다.

제10장 인증 분야의 확대 또는 축소

43. 인증 분야의 확대를 신청하는 조직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에 신청한다.
44. 인증 분야는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대한다.
45. 인증 분야는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가 조직의 인증 분야에 대한 감독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축소한다.
46. 인증 분야의 축소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47. 인증 분야의 확대 또는 축소 시 이전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다. 새 적합성 인증서는 이전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가 이를 발급한 MTSO에 반환된 후 발급한다.

48. 인증 분야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MTSO의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직에 전달한다.

49. 조직은 MTSO의 인증 분야 확대 또는 축소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전의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에 반환하여 이후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이 국가 등록부에서 말소하고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종료 및 취소

50. 다음의 경우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또는 법원은 6개월 이내 동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경영시스템이 인증된 조직(이하 '조직')이 감독 심사 중 확인된 부적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조직이 규범적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직이 감독 심사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직이 자발적으로 인증서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경우.

51. 다음의 경우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또는 법원은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을 종료한다.

감독 심사 결과에 따라;

조직이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종료를 신청한 경우;

조직이 해산된 경우;

조직이 해산, 활동 중단 또는 조직개편의 결과로, 또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MTSO,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조직이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조직이 규범적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1회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MTSO의 적합성 인증서 발급 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52.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은 종료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종료된다.

53. 다음의 경우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및 법원은 적합성 인증서를 취소한다.

감독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54. MTSO,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및 법원이 적합성 인증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 적합성 인증서는 해당 결정이 조직에 통지된 날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55. MTSO의 적합성 인증서 효력 정지·종료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조직에 전달된다.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의 적합성 인증서 효력 정지·종료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조직 및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에 전달된다.

법원의 적합성 인증서 효력 정지·종료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조직 및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에 전달된다.

조직은 MTSO,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또는 법원의 적합성 인증서 효력 종료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에 반환하여 이후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이 국가 등록부에서 말소하고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56. 조직은 MTSO 또는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의 적합성 인증서 효력 정지·종료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57. 조직은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종료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된 경영시스템의 존재를 표시하는 표지, 문구상 참조 및 모든 형태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권리가 없다.

제12장 인증된 경영시스템의 주기적 평가

58. 인증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감독 심사는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 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TSO가 수행한다.

59. 인증된 경영시스템은 다음의 주기로 감독 심사를 받는다.

제1차 감독 심사 — 적합성 인증서가 작성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제2차 감독 심사 — 제1차 감독 심사를 수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60. MTSO가 인증된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특별 심사를 수행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의 변경;

인증 조건의 변경; 불만;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사정.

61. 수행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의 확인, 효력의 정지·종료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3장 이의신청 심사

62. 적합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의 이의신청위원회에 또는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63.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의 이의신청위원회는 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심사한다.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장의 명령으로 승인한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채택된 결정에 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4. 이해관계인은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4장 최종 규정

65. MTSO는 발급 및 취소된 적합성 인증서, 효력이 정지·종료된 적합성 인증서, 적합성 인증서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기록·관리하며, 매월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에 해당 정보를 제출한다.

66. 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문서·정보 및 기록(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인증 분야의 확대(축소)·효력 정지·종료 및 취소에 관한 결정, 그 밖의 인증 활동에 관한 정보 포함)은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그 후 3년 동안 보관한다.

67. 필요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은 MTSO에 인증에 관한 문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MTSO는 조직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요청된 인증 관련 문서 및 정보의 사본을 제출한다.

68. MTSO는 자신의 활동 수행 결과로 신청자 또는 조직에 관하여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69.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자는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증 국가 시스템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적합성 평가기관 국가 등록부 번호)

적합성 인증서

인증 국가 시스템의 국가 등록부에 등록된 번호:

(국가 적합성 마크)

발급일:

유효기간:

본 적합성 인증서는 다음 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조직 명칭)

주소:

추가 정보:

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규범적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에 정해진 요구사항)

위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적용 분야: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장

(서명)

(성명)

인장 위치

특기사항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2

표 2a

인원 수	경영시스템의 개발·도입 및 교육 기간 (일)	경영시스템 인증 비용
1 — 5	1.5	참여 인원 수와 관계없이 영업일 1 일당 기준계산액의 2.5배
6 — 10	2	
11 — 15	2.5	
16 — 25	3	
26 — 45	4	
46 — 65	5	
66 — 85	6	
86 — 125	7	
126 — 175	8	
176 — 275	9	
276 — 425	10	
426 — 625	11	
626 — 875	12	
876 — 1 175	13	
1 176 — 1 550	14	
1 551 — 2 025	15	

표 2a

인원 수	경영시스템의 개발·도입 및 교육 기간 (일)	경영시스템 인증 비용
2 026 — 2 675	16	
2 676 — 3 450	17	
3 451 — 4 350	18	
4 351 — 5 450	19	
5 451 — 6 800	20	
6 801 — 8 500	21	
8 501 — 10 700	22	
> 10 700	위 누진 방식에 따름	

비고. 표의 경영시스템 인원 수는 상시 인원으로 본다.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선은 최저점의 값에서 시작하여 각 구간의 끝점을 지나도록 그려야 한다. 표의 시작점은 1.5 일 동안 투입되는 직원 1 명으로 설정해야 한다.

표 2b

경영시스템 도입 및 교육 기간 (일)	경영시스템 도입 및 교육 비용
10	참여 인원 수와 관계없이 영업일 1일당 기준계산액의 2.5배

비고. 경영시스템 도입 및 인원 교육 기간은 표준 수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3

단계	주체	조치	이행 기한
1단계	신청자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문서 일체를 작성한다. 인증기관에 경영시스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2단계	인증기관	1. 제출된 문서 및 정보의 완전성에 관하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a)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된 정보를 분석한다. b) 인증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b) 문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한다. 2. 인증 신청이 수락된 경우, 접수일부터 MTSO와 신청자 간에 인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3. 심사원 그룹을 구성한다. 4. 제1단계 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단계	주체	조치	이행 기한
		5. 제2단계 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6. 경영시스템이 규범적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영시스템 심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제출한다. 7. 정해진 기한 내에 부적합이 해소되었다는 정보 및 증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인증 업무를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보낸다. 8. 감독 심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적합성 인증서 확인 결정을 채택하고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3단계	신청자	생산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증빙 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
4단계	인증기관	경영시스템 문서의 분석 또는 경영시스템 심사에서 확인된 부적합이 해당 보고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MTSO는 적합성 인증서 발급 거부 결정을 채택한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4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장 귀하

경영시스템 인증 (경영시스템 인증 분야 확대) 신청서

에

(규범적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의 규범 문서)

정해진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하여

(조직 구조의 소재지를 명시한 신청 경영시스템 분야의 명칭)

경영시스템을 인증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

전체 명칭:		
약칭:		
해당 법인이 상위 조직에 속하는 경우, 그 상위 조직의 명칭:		
우편 주소:		
전화:		
이메일 주소:		
STIR:		
IFUT:		
은행 정보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거래 은행의 MFO:	
총 정원 수:		
세부 인원	관리 직원:	
	서비스 직원:	
	기술 직원:	
경영시스템 책임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정보:		
경영시스템에 관한 일반 정보		
경영시스템 개발일 및 도입일:		
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되는 제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규제 분야의 규범 문서 명칭:		
이전에 실시된 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정보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명칭:	
	경영시스템 인증의 근거가 된 규범적 법령 및 기술규제 분야의 규범 문서 명칭:	
	적합성 인증서 서식 번호 및 등록번호:	
	적합성 인증서 발급일:	
	적합성 인증서 유효기간:	

신청자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1. 본 규정은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에서 정한 의무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식별과 그 정보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제정한다.

본 규정의 요구사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자유 유통 중인(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본 규정은 위생·수의·수의위생·식물검역 규칙, 기준, 도시계획 기준 및 규칙, 환경 기준 및 규칙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식별, 자유 유통에서의 회수 및 폐기 요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규정에서는 다음의 주요 용어가 사용된다.

권한기관 —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또는 그 조직 내의 권한 있는 기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 권한기관이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제품;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 —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에서 정한 의무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전자 형식으로 유지하는 목록(이하 '전자 목록');

제품 소유자(제조사, 판매자 및 수입자) —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법적 근거로 제품을 소유하는 법인 및 개인;

제품의 회수 —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유통에서 회수하는 것;

제품의 폐기 — 소비자의 건강과 안녕, 동식물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고 모든 소비 특성의 상실 및 완전한 사용 불가로 인해 이후 다른 목적의 사용이나 재가공이 불가능하며,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폐기하고, 또한 제품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 동물 및 식물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

3. 제품이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에서 정한 의무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소유자는 권한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재정적 제재의 적용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제2장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정하는 절차**

4. 제품을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권한기관이 결정한다.

5. 제품을 정해진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적합성 평가 문서(적합성 인증서, 위생 결론, 시험 보고서)가 없는 경우;

선정된 샘플에 대하여 인정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제품이 위조된 경우;

소비자 포장에 손상된 경우;

국가 등록, 인증, 적합성 선언 등의 분석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보관·운송 및 판매 요구사항이 위반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관 및 라벨링에 제조 기업(판매자) 명칭, 제품 명칭, 제품·상품 및 서비스 식별 코드(법률에서 정한 제품 유형별), 규범 문서에 대한 참조, 제조일, 구성, 보관 기간을 식별 및/또는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표시가 있거나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6. 제품이 권한기관에 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전자 목록에 입력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정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한 시험(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외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에 부적합하다고 작성된 공식 문서가 있는 경우.

제3장 제품의 회수

7. 권한기관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위해 제품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제출한다.

8.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채택된 결정을 권한기관에 서면(전자) 형식으로 통지한다.

9.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본 규정 제8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한다.

10. 사업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험센터(시험소) 및 인정받은 기관에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한 결과를 확인하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를 권한기관에 통지한다.

1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해당 인정 범위를 갖춘 시험센터(시험소) 및/또는 인정받은 기관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외국 시험센터(시험소) 및/또는 인정받은 기관에 신청할 권리가 있다.

12.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반입 및/또는 유통을 즉시 중단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유통에서 회수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구매자(소비자)에게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하여 통지하는 조치를 취한다(주문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을 넘기지 않고 언론을 통하는 방법 등).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권한기관에 서면(전자적 형식)으로 통지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수령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회수에 대하여 통지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이 발송된 모든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회수(반환)한다.

13. 권한기관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을 근거로 제품을 판매 회수한다.

기술규정 및 표준에서 정한 안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고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제품의 추적성을 보장하는 문서)이 없는 경우.

14.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본 규정 [부속서 1](#)에 따라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의 회수 확인서(2부)를 작성한 후 판매 회수한다. 확인서 1부는 상업 시설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보관한다.

15. 회수된 제품은 재가공 또는 폐기에 관한 결정이 채택될 때까지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의 부지(별도의 절차 적용) 내에, 접촉할 수 없는 여건을 갖춘 명확히 표시된 장소에 '회수됨, 판매 불가'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 보관한다.

16.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 수입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제품 반환 방법, 접수 지점의 위치 및 제품 회수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책임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 공화국 정기 간행물 및/또는 TV·라디오 채널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회수함을 통지한다.

17.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수입자) 및 판매자는 상호 협력하여 회수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18.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수입자) 및 판매자는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하고, 본 규정 [부속서 2](#)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회수된 제품의 인수·인계 확인서를 2부 작성한다. 확인서 1부는 소비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및/또는 판매자가 보관한다.

19.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수입자)는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회수 및/또는 반환한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제품 회수 및/또는 반환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그 결과를 권한기관에 통지한다.

20.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회수 및/또는 반환 사례에 관한 정보는 권한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제4장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폐기 절차

21. 권한기관은 부적합으로 판정한 제품의 폐기 조치를 위해 제품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제출한다.

22.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반입 및/또는 유통을 즉시 중단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유통에서 회수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구매자(소비자)에게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하여 통지한다(주문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언론을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 등).

폐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폐기 방법·장소·시기 및 조건을 명시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폐기 결정을 내린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폐기하고, 선택한 폐기 방법·장소·시기 및 조건을 명시한 증빙 문서를 제출한다.

반출일 및/또는 반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반출 또는 반환하고, 증빙 문서를 제출한다.

23.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소유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 감독 기관의 통보서에 근거하여 제품을 유통에서 회수하고 임시로 보관한다.

2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소유자가 유통에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 감독 기관은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후속 폐기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제소한다.

25.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임시 보관은 폐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제품에 무단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조건에서 해야 한다.

26. 임시 보관 중인 부적합 판정 제품의 기록은 품질이 양호하고 안전한 제품의 기록과 분리하여, 종이 및 전자 형식으로 유지한다.

27. 유통에서 회수된 부적합 판정 제품은 그 폐기 가능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 제품의 감정을 수행한다.

28. 감정을 수행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부적합 판정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관능 지표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제출된 정보에 부적합한 제품;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

지표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 기술규정, 표준화 문서, 기술 문서에 부적합한 제품.

29. 감정은 국가 감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수행한다.

30.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품 첨부 문서의 작성이 올바른지, 기재된 정보 지표가 부과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포장·표시 상태의 평가, 외관 검사 및 시험소 검사(시험) 등을 포함한다.

31. 감정 대상이 되는 부적합 판정 제품의 샘플(시료)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소 검사(시험) 수행 시 그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다음 당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국가 감독 기관의 권한 있는 대리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대리인(제품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감정 수행을 신청한 경우).

32. 수행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후 폐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작성한다.

33.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소유자 또는 제품 소유자가 계약에 따라 폐기 업무를 위탁한 조직이 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폐기한다. 위원회는 지방 집행권 기관, 감독 기관, 위생·역학적 복지 및 공중보건 서비스, 세무 기관 및 시민사회의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다.

3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폐기 장소를 정할 때에는 생태 및 환경보호 분야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폐기 방법에 관한 결론을 고려한다.

35. 오염 물질을 함유한 부적합 판정 제품은 폐기 전에 어떠한 사용 및 적용에도 부적합한 상태, 또한 사람·동물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6.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 및 기술 문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기술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37. 감정 결과 사람과 동물의 질병 또는 중독을 유발·전파할 위험 및 환경 오염의 위험을 초래함이 확인된 부적합 판정 제품은, 해당 제품의 폐기 신청서를 발행한 국가 감독 기관의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폐기하며, 이 경우 해당 대리인은 영상 통신을 통한 원격 입회도 가능하다.

38.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폐기를 위하여 반환된 제품의 소유자인 사업자는 권한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선택한 폐기 방법·장소·시기 및 폐기 조건을 명시한 증빙 문서를 제출하여 부적합 판정 제품이 폐기되었음을 또는 부적합 판정 제품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반출되었거나 반환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39. 유통에서 회수된 부적합 판정 제품의 폐기 방법과 조건은 법령, 국제조약 및/또는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정한다.

40.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유통 회수(리콜)·반환·보관·운송(반출)·폐기와 관련된 비용은 통보서의 수신자인 사업자 또는 조치를 위하여 부적합 판정 제품을 반환 받는 사업자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기술규제·표준화·적합성 평가 및 계량 분야 법률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목록 관리 절차

41. 권한기관은 국가 감독 결과에 따라 기술규제·표준화·적합성 평가 및 계량 분야 법률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전자 시스템에 입력한다.

42. 제품이 기술규정 및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권한기관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미비점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제품 및 그 제조자를 판매가 일시 중단되는 제품 목록에, 소비자의 건강과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 요구사항이 위반된 경우에는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 목록에 입력한다.

43. 기술규정 및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에는 다음 정보를 입력한다.

제품(상품) 명칭;

제조 기업 명칭; 제조자 STIR;

제조 기업 공식 대리인의 STIR; 제조 국가명;

제품 배치;

대외경제활동 상품 분류 코드 번호; 제품 금액;

제품 제조 시기(일·월·연); 제품 소유자 정보;

부적합 제품이 확인된 상업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제품에서 확인된 부적합;

적합성 인증서 및 시험 보고서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 제품의 수입 금지가 부과된 날짜;

제품 수입에 부과된 금지의 종료일.

44. 제품의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기술규정의 이행을 담당하도록 지정된 국가 및 경제 관리 기관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 권한기관에 본 규정 제48항에 규정된 정보를 제출한다.

45. 권한기관은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부적합이 확인된 당일에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을 등록한다.

46. 본 목록에 입력된 수입 관련 부적합 판정 제품에 관한 정보는 경제재정부 산하 관세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47. 기술규정·표준 및 법령에서 정한 의무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에 입력된 제품은, 등록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목록에서의 말소, 해당 부적합 판정 제품의 제조자(그 공식 대리인)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로의 반입 및 자유 유통 제공이 금지된다.

48. 사업자는 본 규정에 명시된 6개월의 금지 기간이 지난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새로운 배치를 현행 기술규정 및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해당 문서(시험 보고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기술공정 문서)와 함께 권한기관에 신청한다.

49. 제출된 문서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권한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현장에 나가 생산 조건을 조사한다.

50. 판매 금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제품 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제6장 제품 반입/판매 재개 절차

51.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제조자 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법령에 따라 제조자의 이익을 대표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수입자(이하 '사업자')는 부적합 판정 제품을 기술규정 요구사항 및 의무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기술규정 및 현행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의 반입 및 판매 재개 가능성 검토를 위해 해당 문서(시험 보고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기술공정 문서)를 첨부하여 권한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52. 권한기관은 제출된 문서 일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분석하고, 제품의 반입 및 판매 재개에 관하여 채택된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53. 제출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의무 표준에 위생·역학, 수의, 식물검역 또는 환경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권한기관은 위생·역학 및 수의 감정, 식물검역 통제 또는 환경 감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한다.

사업자는 국가 위생 감독 기관, 국가 수의 감독 기관, 식물검역 국가기관, 환경보호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결론을 받아 권한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험 수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54. 문서 일체의 검토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신청자는 권한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반입 및 판매가 가능함을 통지 받는다.

55. 권한기관은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7장 기업이 제조한 제품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반입 및 유통 재개

56. 기업이 제조한 제품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반입 및 유통 재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출한다.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가 이행한 시정조치 정보. 사업자가 취한 시정조치 정보에는 제한 조치 적용의 근거가 된 지표와 관련하여 정해진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의 제조를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한 조치가 취해진(특히 위반된 지표가 있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모든 안전 지표에 대하여 인정받은 시험소(센터)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 정보. 제품의 시험은 이행된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시정 작업이 수행된 후 새로 제조된 제품 배치에서 수행해야 한다. 제한 조치 적용의 근거가 미생물학적 안전 지표에 대한 부적합인 경우, 제품 제조 후 그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수행해야 한다.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의 의무적 확인 수행 정보. 의무적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정보로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 평가(확인) 문서의 공인 사본을 제출한다.

제한 조치 도입의 근거가 미생물학적 안전 지표의 부적합이었거나 시정조치의 수행을 계기 측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조(생산)·보관·운송(차량 운송) 과정이 안전한 제품의 유통 제공을 보장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로는 국가 감독(검사) 기관의 지역 부서가 수행한 통제(검사) 조치·검사·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긍정적 결론을 제출한다.

라벨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따른 제한 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라벨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정보 및 제조업체가 승인한 라벨 샘플(모델)을 해당 제한 조치 적용을 위한 제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항목에 제출한다.

기술공정 문서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조자가 제품 구성품, 그 제조 기술, 제품 라벨링, 구성, 유효기간, 영양가 지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변경(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술공정 문서에 적용한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로는 기술공정 문서(기술 사양, 기술 지침, 배합 등)의 공인 사본을 제출한다.

제8장 수입 제품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반입 및 유통 재개를 위한 수입자의 행위 절차

57. 제품 수입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시험을 수행할 목적의 제품 배치에 대한 반입 허가를 권한기관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이행한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 및 인정받은 시험소(센터)가 제품 제조자 소재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한 제품 안전성 지표 시험 결과를 첨부한다.

58. 권한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수입자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 배치를 반입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59. 수입자는 시험을 위하여 제품 배치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로 수입한 때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제품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권한기관에 반입 제품을 통지한다.

60. 시험을 완료한 후, 수입자는 권한기관에 제품 반입 및 유통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신청한다.

61.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자는 제조된 제품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반입 및 유통 재개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권한기관에 제출한다.

제9장 최종 규정

62.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 적합성 확인, 그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의 회수, 폐기는 본 규정 [부속서 3](#)에 따른 체계로 수행한다.

63. 권한기관은 다음 정보에 근거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을 유지한다.

기술규정의 이행을 담당하도록 지정된 국가 및 경제 관리 기관이 확인한,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기술규정 요구사항 포함)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한 정보;

보건부, 건설·주택공익사업부, 생태·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제품에 관한 정보.

본 조항에 기재된 기관은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에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본 규정 [부속서 4](#)에 따른 정보를 전자 형식으로 제출한다.

64. 권한기관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자체 공식 웹사이트 또는 언론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품에서 확인된 부적합에 관하여 일반 대중 및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65. 권한기관에 제출된 정보 및 문서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는 이를 제출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책임을 진다.

66. 권한기관은 제출된 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한 목록 입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7.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1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회수 확인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이 회수된 장소

제조사(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수입자)

(제조사 / 수입자의 성명, 직위, 주소)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술규정 명칭)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회수된 제품

(제품명, 일련번호)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 총계 _____

순번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의 명칭 및 MXIK 코드 (법령에서 정한 제품 유형별)	배치 번호	제품 제조국	배치 규모	회수된 제품 수량 (개/kg)
1	2	3	4	5	6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수입자))

(일자) _____

(서명) _____

(판매 시설 또는 판매자의 성명)

(일자) _____

(서명) _____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2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인수·인계
확인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이 인수된 장소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의 인수 시작 시간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의 인수 종료 시간

정해진 기한을 위반하여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있는 경우)

장소

(지연 사유)

인수

(제품 반입 및 폐기 시간)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 판매자(수입
자) 대표

(성명, 직위, 주소)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회수된 제품

(제품명, 일련번호 및 제조일자)

소비자 대표

(성명)

근거

(기술규정 명칭)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 총계 _____.

순번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 명칭 및 MXIK 코드 (법령에서 정한 제품 유형별)	배치 번호	제품 제조국	배치 규모	회수된 제품 수량 (개/kg)
1	2	3	4	5	6

(제조자(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공급자(수입자))

(일자)

(서명)

(판매 시설 또는 판매자의 성명)

(일자)

(서명)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3

단계	주체	조치	기한
1단계	권한기관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상시
2단계	권한기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품 소유자에게 통보서를 제출한다.	상시
3단계	사업자	통보서를 받은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택된 결정을 권한기관에 서면(전자) 형식으로 통지한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4단계	사업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험센터(시험소) 및 인정받은 기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권한기관에 통지한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5단계	사업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반입 및/또는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유통에서 회수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6단계	사업자	언론을 통하여 구매자(소비자)에게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하여 통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7단계	사업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권한기관에 서면(전자)으로 통지한다.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단계	주체	조치	기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이 사업자로부터 판매 회수되었음을 통지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이 적재·발송된 모든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유통에서 회수(반환)한다.	
8단계	권한기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폐기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품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제출한다.	상시
9단계	사업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반입 및/또는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유통에서 회수한다. 반출 및/또는 반환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을 넘기지 않고 증빙 문서를 제출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반출하거나 반환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10단계	사업자	통지서를 받은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하여 언론을 통하여 구매자(소비자)에게 통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11단계	사업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폐기 결정을 내린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12단계	사업자	선택한 폐기의 방법·장소·시기 및 조건을 명시한 증빙 문서를 제출한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폐기한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13단계	권한기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소유자가 이를 유통에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유통 회수 및 이후 폐기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제소한다.	상시
14단계	권한기관	모든 경우에 유통에서 회수된 부적합 판정 제품의 폐기 가능 여부를 확인할 목적의 감정을 수행한다.	규범 문서에서 정한 기한 내
15단계	권한기관	수행된 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이후 폐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작성한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16단계	권한기관, 사업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제품 소유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조직이 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폐기한다.	상시
17단계	권한기관	국가 감독 결과에 따라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전자 시스템에 입력한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18단계	권한기관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에 입력된 제품을 등록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목록에서 말소하는 것, 해당 부적합 판정 제품의 제조자(그 공식 대리인)에 의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로 반입 및 자유 유통되는 것을 금지한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19단계	사업자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제품의 새로운 배치를 현행 기술규정 및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하여 제품의	상시

단계	주체	조치	기한
		적합성을 확인한 후, 해당 문서(시험 보고서, 사진·동영상 자료, 기술공정 문서)와 함께 권한기관에 신청한다.	
20단계	사업자	제품 수입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제품 배치의 반입 허가를 권한기관에 신청한다.	상시
21단계	사업자	권한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수입자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 배치를 반입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상시
22단계	사업자	수입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 배치를 반입한 때부터 첨부 문서를 제출하여 제품을 반입하였음을 권한기관에 통지한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23단계	사업자	시험을 완료한 후, 수입자는 제품의 반입 및 유통 재개 가능성의 검토를 권한기관에 신청한다.	상시

제품의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 및 기타
규범적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의 목록 관리, 자유 유통에서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4

단계	주체	조치	기한
1단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 건설·주택공익사업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생태·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부	제품(상품) 명칭; 제조 기업 명칭; 제조자 STIR 번호; 제조 기업 공식 대리인 STIR 번호; 제조 국가 명칭; 제품 배치; 대외경제활동 상품 분류 코드 번호; 제품 금액; 제품 제조 시기(일·월·연); 제품 소유자 정보; 부적합 제품이 확인된 상업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제품에서 확인된 부적합; 적합성 인증서 및 시험 보고서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 위 정보를 권한기관에 서면(전자) 형식으로 통지한다.	매월 5일까지
2단계	권한기관	자체 공식 웹사이트 또는 언론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품에서 확인된 부적합에 관하여 일반 대중 및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2024년 8월 14일자 [결의](#) 제502호의
부속서 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의 일부 결의에 대한 개정 및 신설

1. '제품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2004년 7월 6일자 내각 [결의](#) 제318호에서:

a)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이전](#) 개정문 참조.

(제1항 'a'호의 세 번째 단락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2025년 11월 13일자 [결의](#) 제720호에 따라 삭제됨 —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5.11.14., 제09/25/720/1052호)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을 부속서 2에 따라 승인한다";

[이전](#) 개정문 참조.

(제1항 'b'호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2025년 11월 13일자 [결의](#) 제720호에 따라 삭제됨 —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5.11.14., 제09/25/720/1052호)

v) 다음 내용의 부속서 2를 신설한다.

2004년 7월 6일자 내각

결의 제318호의

부속서 2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1. 본 규정은 제조 및 수입 제품을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하는 절차를 정한다.

제품 인증의 조직 및 수행 업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제품 인증기관(이하 'MSO')이 수행한다.

각 제품 유형별 인증 절차는 MSO가 개발·승인한 품질 매뉴얼 및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로 정한다.

본 규정은 제품 또는 제품 요구사항과 관련된 설계 과정(연구 포함), 제조, 건설, 설치, 조정, 사용, 보관, 운송, 판매 및 폐기(이하 '제품')에 대하여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체계를 포함한다.

인증 과정에서 이전에 검증된 안전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의 디자인 또는 외형 특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의 추가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품 안전에 관한 의무 특성은 표준에서 정한다.

2. 본 규정은 제품을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제품 인증 시 MSO가 여럿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에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제품 인증은 본 규정 부속서 1에 제시된 체계에 따라 수행한다. 이 경우 본 규정 제16장에 제시된 제품 인증 체계 및 부속서 2에 제시된 적합성 인증서를 통한 제품 적합성 확인표를 적용한다.

인증 체계는 검사 범위, 인증 체계의 복잡성 및 제품 안전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제품 인증에 권장되는 체계는 본 규정 제16장에 제시되어 있다.

각 구체적 사안에서 MSO는 신청자의 제안, 공급되는 제품의 분량 및 기한, 시험 방법, 생산 특성, 제품 안정성 저하 위험 및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인증 체계를 선택한다.

국제 시스템 또는 협정에 따른 인증은 해당 문서에 규정된 체계에 따라 수행한다.

4. 인증에는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 특성(지표) 목록, 검사 및 시험 방법이 포함되며, 인증되는 제품이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표준에 인증 시험에 관한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국가 간 표준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MSO는 표준에 제시된 특성의 집합에서 우선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지표를 선택한다.

5. 인증 시에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표준 외에 제품의 의무 요구사항을 정하는 규범적 법령 및 그 밖의 공식 공표된 규범 문서도 준수해야 한다.

6. 제품 시험 수행 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 인정을 받은 시험소(이하 'SL')는 국가 인정을 받은 다른 SL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

SL에서 특정 지표에 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MSO는 추가 시험 없이 그 결과를 제품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수행 시점을 고려하며, 그 기간은 제품 표준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인증 업무 비용은 적합성 평가 업무 결과와 관계없이, 신청자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불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 업무는 비용이 선지불된 후에 수행한다.

8.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작성 및 발급 기한은 모든 필요한 문서(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가 제출된 때부터 영업일 기준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주요 용어

9. 본 규정에서는 다음의 주요 용어가 사용된다.

신청자 — 제조자, 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판매자 또는 수입자;

인정받은 시험소(센터) — 인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적합성 평가 분야 단일 국가 등록부에 등재되어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그 법인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해당 법인의 구성 부서;

생산 평가 — 인증기관이 제조자가 공화국 영토 내 유통을 위해 출시된 제품이 표준 요구사항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나타내는 제품 인증 체계의 일부;

수입자 —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제조자(판매자)와 대외무역 거래를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공화국 영토에서 유통하고 해당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제조자의 자체 시험소 — 제조자의 구성 부서로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부서;

제조자의 지사 — 제조자의 법인이 아니고 그 소재지 밖에 위치하면서 제조자의 모든 기능 또는 그 일부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

제품 배치 —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화물 문서에 따른 동일 유형·동일 명칭·동일 표시의 제품 단위;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 인증된 제품이 인증 시점에 정해진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주기적·반복적 평가 절차;

판매자 — 제조자가 아니면서 계약에 따라 제품을 유통에 제공하는,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인증 체계 —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의 증거로 검토되는 일련의 행위;

연속 생산 제품 — 단일 기술 문서에 따라 단일 기술공정으로 제조되어 공화국 영토에서 주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유통에 제공되는 제품 배치;

화물 첨부 문서 — 제품의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하는 문서;

단일 품목 — 낱개 제품의 개별 단일 개체;

전문가 — 특정 분야에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할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인증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제3장 인증 절차

10. 적합성 인증서는 MSO가 작성한다. 신청자는 독자적으로 MSO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품 인증을 위하여 신청자는 본 규정 부속서 3에 제시된 양식으로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MSO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11. 제품 인증 체계는 다음 절차를 순차적으로 포함한다.

a) MSO에 인증 신청서 제출 및 MSO의 검토

b) 제출된 제품 표준 및 신청서에 첨부된 기타 문서의 분석

v) 신청서에 대한 결정 채택

g) 지식재산권 대상(상표,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이하 'IMO')에 대한 권리가 준수되었는지 조사 및 검증

d) 시험 프로그램의 준비 및 승인(제6체계 제외)

e) 샘플의 식별, 선정 및 SL에 인도(제6체계 제외)

j) SL에서 샘플 시험(제6체계 제외)

z) 제품 제조 여건 평가(인증 제3·4·5체계의 경우)

x) 품질시스템 평가(제5·6체계의 경우)

y) 획득한 결과의 분석, 적합성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

k) 적합성 인증서의 국가 등록부 전자 등록.

12. 신청자는 언제든지, MSO는 최초 요청 시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a)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 인증 규칙
- b) 인증 서비스 가격(요금) 가격표
- v) 인정 증명서.

제4장 신청서 제출

13. 제조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MSO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문서를 첨부한다.

제품 표준 사본;

제품 표시(라벨링) 샘플(제품에 관한 정보);

IMO 등록 보호 문서(증명서 또는 특허) 또는 IMO 사용 라이선스(있는 경우);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에 대한 증거로 신청자가 제출한 그 밖의 문서(있는 경우);

외국어로 작성되어 신청서에 첨부되는 문서는 우즈베크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 제출된 제품에 대하여 표준에 수의·식물검역 또는 환경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MSO는 수의 감정, 식물검역 통제 또는 환경 감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업무는 인증 시험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되어야 한다.

15. 신청서에 규정된 경우, MSO는 수의 및 식물검역 결론 사본의 취득 기한을 미루고 제조 제품의 인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모든 필요한 긍정적 결과 문서의 사본을 제출한 후에만 제조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지식재산권 대상에 대한 권리의 조사 및 검증

16. 제품 인증 과정에서 MSO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명칭, 포장 및 그 밖의 표시에 IMO 권리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검증을 수행한다.

이 조사 및 검증은 인증 시험을 위하여 선정된 제품 샘플(라벨 및 포장)에 사용된 표지·명칭 및 그 밖의 표시를 법무부의 '산업재산권 보호 포털'에 있는 기존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수행한다.

17. 해당 제품에 사용된 IMO 등록 보호 문서(증명서, 특허 또는 그 부속서)의 사본, 또는 IMO 사용 계약의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다.

조사 및 검증 결과 해당 제품에 IMO가 위법하게 사용된 것(위조)으로 확인된 경우, MSO는 인증 업무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거부 회신을 한다.

이 경우 제품에 IMO가 위법하게 사용된 것(위조)을 확인한 MSO는 해당 정보를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이하 '기술규제청') 및 법무부에 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인증 신청서 및 문서 일체의 검토·분석

18. MSO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를 다음의 관점에서 검토·분석한다.

- a)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b) 신청서에 제출된 문서 일체에서 자료가 완전하고 충분한지.

신청서가 제출된 후 MSO는 이를 검토하고 제출된 문서를 분석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제품 인증의 정해진 절차에 근거한 인증의 모든 주요 조건(인증 체계, 인증을 위한 규범 문서, 시험을 수행하는 SL 등)을 명시하여 결정을 통지한다. 권장 결정 양식은 본 규정 부속서 4에 제시되어 있다.

인증되는 제품의 표준에 수의·식물검역 또는 환경 기준 및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결정에는 수의·식물검역 결론 또는 환경 감정을 받을 필요성도 명시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의 검토·분석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MSO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서의 미비점 또는 문서 일체의 보완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 업무 수행 거부를 통지한다.

MSO가 인증 업무 수행 거부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거부의 근거가 된 미비점을 해소한 후 신청서 및 문서 일체를 해당 MSO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제품의 식별, 샘플(개체) 채취, 시험 및 측정

19. MSO는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한 후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현장에 나가 인증 시험을 위한 제품 샘플을 선정하고 식별한다.

샘플의 수, 선정 절차, 식별 및 보관 규칙은 제품 표준(시험 방법 포함)에서 정한다.

20. 인증을 위하여 제출된 제품 샘플의 선정 시 식별 업무는 표준 및 MSO가 개발·승인한 해당 인증 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본 규정 부속서 5에 따라 샘플 식별 및 선정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품의 라벨(표시) 및 상품 운송 문서가 식별자로 간주된다.

식별 결과 신청자가 제출한 샘플이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적합하거나, 인증 대상 제품 유형이 정해진 샘플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시험 수행에 충분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샘플을 선정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거부 회신을 한다.

21. 제품 샘플의 선정 및 식별 확인서는 2부로 작성하고 그중 1부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22. 신청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인증되는 제품의 기술 사양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는 MSO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인정체계에서 인정받았거나 외국에서 인정받은 SL이 수행한 시험 문서(시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MSO는 시험 보고서를 인정함에 있어 보고서에 기재된 시험 요구사항 및 결과가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MSO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시험 보고서를 인정하거나 신청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거부 회신을 보낸다.

23. 특정 유형의 제품을 인증할 목적으로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기한은 해당 유형 제품의 표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시험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샘플의 보관, 품질 및 시험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SL(센터)이 책임을 진다. 시험 보고서는 책임 전문가가 서명하고 시험소장이 서명 및 인장으로 확인한다.

시험 보고서는 신청자 및 MSO에 제출된다. 제품의 시험이 개별 항목별로 서로 다른 SL에서 수행된

경우, 제품이 정해진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시험 결과가 있으면 모든 긍정적 시험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 인증 시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MSO가 각 구체적 사안에서, 자신이 보유한 추가 문서(품질시스템 또는 생산에 대한 인증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시험 보고서, 수의·식물검역 결론, 환경 감정, 공급자의 기술 문서 등)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청자는 인정받은 SL에서 실시한 제품 시험에 관한 추가 문서를 MSO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문서에 SL에서 특정 지표에 대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MSO는 추가 시험 없이 그 결과를 적합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수행 시점을 고려하며, 그 기간은 표준에서 정한 제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5. 인증 업무 비용을 선지불하지 않은 경우, 시험소 시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및 문서 일체를 불완전하게 제출한 경우는 적합성 인증서 발급 거부의 근거가 되며, 이에 관하여 MSO는 구체적 법률 규범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MSO는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관하여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신청자, 기술규제청, 세무위원회 및 경제재정부 산하 관세위원회에 해당 상품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제출한다.

MSO가 발급한 결론에 대하여 신청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

26.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수행한 시험 중 전체 또는 일부 손상된 제품의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 및 손상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확인서는 신청자(또는 그 대리인)가 입회한 가운데 본 규정 부속서 6에 따라 작성한다.

제8장 생산 평가

27. 생산 평가는 MSO가 연속 생산 제품의 인증 시, 제조자에게 제조되는 제품이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지속적(안정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한다.

인증 체계에 따라, 생산 평가 행위는 제품의 적합성을 인증 체계로 확인할 때 또는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수행할 때 실시한다.

생산 평가는 제품의 식별, 샘플(개체) 선정 및 시험 측정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28. 생산은 MSO의 명령으로 승인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명령에는 생산 평가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및 전문가) 및 생산 평가 수행의 구체적 기한을 명시한다. 이 경우 생산 평가 기한은 영업일 기준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9. 생산 평가 위원회는 생산 규모, 기술공정, 제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은 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 및 제품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적격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 유형, 그에 대하여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 및 제조 기술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생산 평가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30. 생산 평가는 MSO 장(장의 대리)이 개발·승인한 생산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제품 제조(현장) 장소에서 수행한다.

생산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제품의 기술(설계 및/또는 구조 및/또는 기술공정 및/또는 사용) 문서;

제조되는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수행 인력의 자격 및 그 안전;

생산 인프라(제조자 부지 내에 위치하며 생산 조직에 필요한 시설의 집합(생산 시설, 운송 차량 등));

장비(기술공정 설비 수단) 및 그 유지보수·수리;

관리·측정 및 시험 장비의 운용, 유지보수 및 수리;

제품이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측정 수단;

인증 제품(원자재, 재료, 부품)의 안전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 제품의 입고 관리;

기술공정, 특수 공정 포함(표준에 해당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완제품의 표준에서 정한 특성의 관리와 관련된 인수 관리 및 주기적 시험;

완제품의 표시(라벨링)·보관·포장 및 보존 조건;

소비자와의 소통(해당 제조자의 제품에 관한 불만 및 분쟁 처리 포함);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의 관리;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시정 및 예방 조치.

31. 생산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MSO 경영시스템의 관리 문서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분석 결과·증빙 문서와 자료에 대한 참조 및 필요한 경우 확인된 부적합의 해소 기한을 명시한 확인서를 2부로 작성하고, 그중 1부는 제조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MSO에 제출한다.

이 경우 생산 평가에서 확인된 부적합 및 그 원인의 해소 기한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 평가 결과 확인서에는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인증 시 적합성이 확인되는 제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산에 갖추어져 있다는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 평가 확인서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 및 제조자가 서명하며, 제조자는 생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확인서에 기재할 수 있다.

MSO는 생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제품 인증 업무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신청자가 확인된 부적합 및 그 원인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인증 업무 중단 결정을 내린다.

확인된 부적합을 시정 조치로 해소할 수 없거나 시정 조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인증 업무 종료 결정을 내린다.

인증 업무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 MSO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인증 업무의 재개를 위하여:

신청자는 확인된 부적합 및 그 원인의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이를 MSO에 통지한다.

MSO는 신청자가 이행한 시정 조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인증 업무 재개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확인된 미비점 및 그 원인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인증 업무는

취소된다.

제품이 제조자의 지사 및/또는 생산 현장에서 제조되는 경우, 제조자가 모든 지사 및/또는 생산 현장에서 제조된 제품의 안전 및 생산의 안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제조자의 한 지사 또는 여러 지사 및/또는 가장 넓은 품목(가장 많은 종류)의 인증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장 많은 분량의 인증 제품 중 가장 복잡한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 현장에서 생산 평가를 수행한다.

생산 평가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MSO는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계획의 범위에서 제조자의 다른 생산 시설에 대한 생산 평가의 후속 일정(평가 일자 명시)을 작성하고 제조자와 합의한다.

32. 이전에 인증된 제품과 구조(구성, 배합) 또는 제조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신제품의 인증 신청이 MSO에 접수된 경우, MSO의 결정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이전 생산 평가 분석 결과를 해당 제품에 부분적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a) 생산 평가를 수행하고 생산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 MSO에 의하여 제품 인증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b) 제조자가 제품 구조(구성, 배합) 또는 제조 기술에 가한 변경이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v) 생산 평가를 수행하고 작성한 생산 평가 결과 확인서 또는 이전에 인증된 제품의 주기적 평가 수행 및 등록에 관한 확인서가 작성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9장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

33. MSO는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일체 및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서(시험 및 측정 보고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생산 평가 확인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를 분석한다.

긍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온 경우, MSO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본 규정 부속서 7에 따라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 결정을 내린다.

34. 제품 인증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MSO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 거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 기술규제청, 세무위원회, 경제재정부 산하 관세위원회 및 관련 부처·기관에 결정 채택 당일에 통지한다(직접, 전자우편 또는 해당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35.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는 본 규정 부속서 8에 따라 단일 전자 형식으로 발급된다.

적합성 인증서는 MSO 장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한다.

적합성 인증서는 제품의 유효기간(제품 유효의 보증기간)으로, 유효기간(제품 유효의 보증기간)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2년 기간으로, 연속 생산 제품에 대하여는 3년 기간으로 발급된다.

연속 생산 제품에 대하여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에 제조된 제품은 인증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인증을 받지 않는다.

제품이 인증되었음을 확인하는 근거는 적합성 마크 및 제품에 첨부되어 사용 문서에 기재된 제조일자이다.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 신청자(적합성 인증서의 소유자)는 적합성 인증서의 사용 권리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권리를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장 단일 국가 등록부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정보 입력

36.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발생 시작일은 국가 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계산한다.

적합성 인증서는 등록 번호가 작성된 날부터 적합성 인증서 국가 등록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7. 적합성 인증서 국가 등록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한다.

38. 인증 과정에서 작성된 다음의 문서는 작성 당일에 MSO가 해당 전자 시스템에 입력한다:

신청서에 대한 결정;

IMO에 관한 정보;

샘플 선정 및 식별 확인서; 시험 보고서;

생산 평가 확인서;

적합성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정;

샘플의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 적합성 인증서.

제11장 적합성 인증서의 변경

39.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및/또는 그 부속서(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는 다음의 경우에 본 규정 제11항 'a'~'k'호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및 그 부속서에 오류·오기가 있는 경우;

제조자의 조직·법적 형태가 변경된 경우;

제조자의 법적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TIF TN 코드가 변경된 경우.

40. 본 규정 제39항에 규정된 경우, 신청자는 MSO에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변경에 관하여 적합성 인증서 및/또는 그 부속서 변경의 근거가 된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신청서 및 본 항 제1단락에 기재된 문서를 검토하고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변경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41. 본 규정 제39항에 규정된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품 적합성 인증서 및 국가 등록부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전자 시스템에서, MSO는 변경된 적합성 인증서에 '변경됨'이라고 표시한다.

42. 본 규정 제39항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MSO는 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 본 규정 제7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가 본 규정 제11항에 규정된 절차의 수행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MSO는 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 본 규정 제39항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를 수행한다.

제12장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43. MSO는 다음의 경우에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a) 제품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및/또는 건강, 재산, 환경, 동물 및/또는 식물계의 안전에 위협이 야기되는 경우;

b) 제품이 표준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 v) 인증 제품에 대한 주기적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 g) 신청자가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 d) 제품 인증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구성) 또는 그 제조(생산) 기술에 변경이 가해졌으나 신청자가 그러한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그러한 변경을 확인하는 문서(구조 문서, 도면, 사양)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e) 신청자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 j) 신청자에게 유효한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가 없는 경우(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z) 기술규제청의 기술규제 분야 감독 기관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효력 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한다.

- a) 제품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및/또는 건강, 재산, 환경, 동물 및/또는 식물계의 안전에 위협이 야기됨이 확인된 경우;
- b) 재평가에서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 v)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재차 확인된 경우;
- g) 제품의 인증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구성) 또는 그 제조(생산) 기술에 변경이 가해졌으나 신청자가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그러한 변경을 확인하는 문서(구조 문서, 도면, 사양)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 d) 신청자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 e) 신청자가 보유한 유효한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yo) 신청자 및/또는 제조 조직이 해산되거나 신청자의 발의로 제품의 연속 생산이 중단된 경우;
- j) 제품에 해당하는 표준이 변경·효력 종료 또는 폐지된 경우;
- z) 기술규제청의 기술규제 분야 감독 기관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그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4. 기술규제청은 법률 규범 위반에 대하여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45.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와 합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마련 및 이행 기간 중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결정은, 신청자가 시정 작업을 수행하여 확인된 미비점을 해소하고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채택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은 종료된다.

46. 제품 적합성 인증서가 정지된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 a)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적합성 마크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 b)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입력한다.

v) 신청자가 미비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다.

g) 신청자의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한다.

47.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신청자는:

a)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수량을 식별·확인한다.

b) 확인된 미비점의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보장한다.

v)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적용)의 위험을 통지한다.

g) MSO에 시정조치 이행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48.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a)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재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적합성 마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b) 제품 적합성 인증서 재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입력한다.

49. 신청자가 확인된 미비점 및 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용(적용)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는 적합성 인증서의 취소 결정을 채택한다.

50. 제조된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정지(재개) 또는 취소가 신청자의 발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자는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및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정지(재개)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된 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51. MSO는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정지(재개)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52. 신청자가 효력이 정지된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MSO는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 후 적합성 인증서 재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53. MSO는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정지(재개) 또는 취소를 국가 등록부의 해당 항목에 입력한다.

54.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은 국가 등록부에 해당 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정지(재개) 또는 종료된다.

제13장 제품 구조(구성)의 변경

55.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의 구조(구성) 또는 그 제조 기술에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가해진 경우, 신청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기 30일 전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에 제품 구조(구성) 또는 제조 기술에 가해진 변경을 확인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MSO는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의 분석에 근거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품 샘플(개체)의 시험 및 측정 및/또는 생산 평가(인증 체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평가가 규정된 경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MSO의 결정은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된다.

56. MSO가 제품 샘플(개체)에 대한 시험 및 측정 및/또는 생산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후에만 구조(구성) 또는 제조 기술에 변경이 가해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57. MSO가 제품 샘플(개체)의 시험 및 측정 및/또는 생산 평가(인증 체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평가가 규정된 경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와 MSO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없는 경우).

수행한 업무 결과에 따라 MSO는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부적합)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된다.

제품이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MSO는 해당 제품을 유효한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하여 유통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제품이 표준 요구사항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MSO는 제품을 유효한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하여 유통에 제공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신청자가 MSO와 합의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58. 신청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MSO는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된다.

59. MSO가 본 규정 제56항~제58항에 규정된 활동의 결과에 근거하여 발급한 문서는 증빙 문서 일체에 포함되며, 신청자는 국가 감독을 위해 MSO(요청 시)에게 그리고 법률에 따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제출한다.

제14장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60.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란 적합성 인증서의 전체 유효기간 동안 제품이 표준에서 정하고 인증 시 확인된 요구사항에 계속 적합한지를 확정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적 평가를 말한다.

61. 인증 제품은(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가 인증서의 전체 유효기간 동안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여러 방법으로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 a) 인증 제품 샘플(개체)의 식별, 시험 및 측정;
- b) 생산 평가.

최초의 주기적 평가는 제품이 인증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행한다. 이후 주기적 평가는 MSO장이 승인하는 주기적 평가 계획·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만 직전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수행한다.

62. 제조자에게 경영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인증 체계의 경우, 인증 제품은 MSO가 인증 제품 샘플(개체)의 시험 및 측정을 통하여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63.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는 MSO가 SL(센터)을 참여시켜(필요한 경우) 수행한다.

64.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는 MSO가 개발·승인한 인증 제품 주기적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한다.

65.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는 다음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 a)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 b)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위한 전문가 그룹(위원회) 구성;
- v)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승인;

- g) 인증 제품에 관한 정보의 분석;
- d) 인증 제품의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따른 시험 수행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의 개발;
- e) 제품의 식별;
- j) 제품 샘플(개체)의 채취 및 그에 대한 시험 수행;
- z) 생산 평가;
- i)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에 따른 확인서 작성;
- k)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의 채택.

66.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67. 인증 제품의 정기 주기적 평가는 인증 형태에 따라 제품 샘플(개체)의 식별, 그에 대한 시험 및 측정, 생산 평가를 통하여 수행한다.

68.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중 제품의 식별 및 샘플(개체) 채취는 본 규정 제7장에 따라 수행한다.

69.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기간 중 생산 평가는 본 규정 제8장에 따라 수행한다.

70. 인증 제품의 제조가 중단되거나 시험 및 측정 수행을 위한 제품 샘플(개체)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인증을 위해 MSO가 정하고 신청자와 합의한 인증 제품 주기적 평가 수행 기한 이전에 MSO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MSO는 접수한 통지에 근거하여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71.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는 해당 확인서로 작성하고 그중 1부는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72.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MSO는 다음 결정 중 하나를 채택한다.

- a) 제품 적합성 인증서가 승인된 것으로 인정;
- b)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 v)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취소.

73.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승인 결정은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 채택하며,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서면으로 송부한다.

74. 신청자가 시정조치 수행을 통하여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부적합 원인을 해소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조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조자가 정기 주기적 평가 수행 업무에 대한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및 제조자가 주기적 평가 수행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주기적 평가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MSO가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자는 MSO와 합의하여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부적합 원인의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 기한을 정한다.

75.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MSO가 이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정한 결과에 근거하여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는 재승인된다.

76. 신청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정한 기한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포함) 및/또는 시정 조치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제조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시험 결과 인증

제품이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제조 장소가 변경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 작성의 근거가 된 제품(상품) 표준이 변경된 경우 및 주기적 평가 과정에서 시정할 수 없는 미비점이 확인된 경우, MSO는 제품 적합성 인증서 취소 결정을 내린다.

77.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MSO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정지·재개 또는 종료에 관한 정보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단일 국가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기술규제청에, 참고용으로 세무 및 세관 기관에, 또한 언론 및 관련 부처·기관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해당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한다.

78. 인증 제품의 수시 주기적 평가는 소비자 및/또는 국가 감독 기관으로부터 제품 안전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정보가 접수된 경우 MSO가 수행한다.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신청자가 인증 제품의 주기적 평가를 수행한 MSO에 신청한 경우, MSO는 해당 제품의 인증 시 마지막 주기적 평가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고려한다(평가 수행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5장 증빙 문서의 작성 및 보관

79. MSO가 발급된 제품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국가 등록부에 입력한 후, MSO와 신청자는 적용된 인증 체계에 따라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는 다음의 문서 및 정보를 포함하는 증빙 문서 일체를 전자 시스템으로 작성한다.

- a) 제품의 기술 문서(설계, 구조, 기술공정, 사용 문서 및/또는 기술 사양의 사본);
- b) 표준 세트에 포함된 표준 목록(명칭과 표시, 표준의 전체가 아니라 그 개별 부분·장 및 항의 적용을 통하여 적합성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부분·장 및 항)(신청자가 적용하는 경우);
- v) 표준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해결책 및 위험 평가 결과의 설명;
- g) 제품 샘플(개체)의 식별 및/또는 선정에 관한 확인서;
- d)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 및 측정 보고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e) 경영시스템 적합성 인증서 사본(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j)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 구성품·원자재·재료 또는 부품의 시험 및 측정 보고서(있는 경우);
- z) 계약(합의) 및 화물 운송 문서의 사본(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i) 공화국 영토로 공급된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을 보장하고, 해당 제품이 정해진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제조자(외국 제조자 포함)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제조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경우);
- k) 생산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서(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n) 신청자가 제품의 표준 요구사항 적합성의 증거로 제출한 그 밖의 문서;
- o) 제품 적합성 인증서;
- p) 신청자가 법률에 따라 국가 등록될 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에게 부여된 등록 또는 회계(개인, 식별) 번호에 관한 정보.

80. 전자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증빙 문서 일체는 인쇄된 형태로 인증기관에 제8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81.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서를 증빙 문서 일체와 함께 보관하는 기간은 표준에서 정한다.

82. 제품의 적합성 인증서를 증빙 자료 일체와 함께 보관하는 기간이 표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최소 1년 동안 보관한다.

83. 적합성 인증서 증빙 문서 일체는 신청자 및/또는 MSO가 공화국 내 국가 감독 수행 및 표준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감독 기관(그 요청에 따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제출한다.

제16장 인증 체계의 적용

84. 제1체계는 제품 유형의 인증에 적용하며, 주로 안전성에 관하여 SL에서 제품의 의무 지표를 시험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체계는 제품에 명확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85. 제2체계는 제품 유형의 인증에 적용하며, SL에서 제품의 의무 지표를 시험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체계는 판매 지점(소비자)에서 채취한 샘플을 시험함으로써 제품을 검사 감독하는 것을 규정한다.

86. 제3체계는 제조 제품의 인증에 적용하며, 의무 지표 검사를 위하여 SL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생산을 평가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체계에서는 제조자로부터 채취한 제품을 시험함으로써 기업에서 검사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규정한다.

87. 제4체계는 제조 제품의 인증에 적용하며, 의무 지표 검사를 위하여 SL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생산 여건을 평가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체계에서는 판매 지점(소비자) 및 생산에서 채취한 샘플을 시험함으로써 제품을 검사 감독하는 것을 규정한다.

88. 제5체계는 제조 제품의 인증에 적용하며, 의무 지표 검사를 위하여 SL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생산 여건을 평가하거나 품질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체계에서는 제품을 시험하고 생산을 검사(또는 품질시스템을 평가)함으로써 검사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규정한다.

89. 제6체계는 품질시스템의 인증에 적용하며, 품질 시스템 평가 및 후속 검사 감독을 규정한다.

90. 제7체계는 제품 배치의 인증에 적용하며, SL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것을 규정한다.

91. 제8체계는 각 제품(품목)의 인증에 적용한다.

92. 제3·4·5·7 및 8체계에 따라 인증된 제품은 적합성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17장 제품 바코드 부여

93. 신청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유럽상품번호협회(GS1)에 따른 기업 등록 번호 및 제조 상품의 디지털 코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GS1 Uzbekistan'에 신청하며, 해당 코드는 1일 이내에 발급된다.

기술규제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코드의 고유 시안을 작성하여 발급한다.

94. 코드 부여 서비스 비용 및 회원비는 'GS1 Uzbekistan' 참가자가 정한다. 바코드 고유 시안의 작성 및 발급은 계약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제18장 정보 제공

95. MSO는 작성·확인·정지 또는 종료된 인증서와 인증서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기록·관리하며, 그에 관한 정보를 매월 기술규제청에 제출한다.

MSO는 자신의 활동 및 발급된 인증서를 이해관계 기관에 통지한다.

96. 기술규제청은: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의 국가 등록부;

정지 및 종료된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제19장 이의신청 심사

97. 이해관계인은 적합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술규제청의 이의신청위원회에 또는 직접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98. 기술규제청의 이의신청위원회는 MSO 및 SL(센터)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심사한다.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기술규제청장의 명령으로 승인한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채택된 결정에 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9. 이해관계인은 기술규제청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0장 최종 규정

100. 기술규제청은 필요한 경우 MSO에 적합성 평가 자료(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101. 적합성 인증서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 인증 기한 및 규칙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MSO가 진다.

102.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103. 인증 절차의 총 기간은 해당 유형 제품을 표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총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1

제품 인증 절차

체계

단계	주체	조치	이행 기한
1단계	신청자	제품 인증을 위한 문서 일체를 작성한다. MSO에 제품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2단계	MSO	1. 제출된 문서 및 정보의 완전성에 관하여 신청서를 검토한다: a)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제품 인증 결정을 내리고 계약을 체결한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단계	주체	조치	이행 기한
		b) 문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문서를 반환한다. 2. 제품 인증을 위한 계약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면, 제품을 식별하고 샘플을 채취하며 IMO에 대한 권리를 조사·검증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3. 제품 설계 조사를 수행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4. 제품 유형 조사를 수행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5. 식별 및 샘플 채취, IMO 또는 제품 설계·유형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해소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6. 확인된 부적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록 업무를 중단한다. 7. 정해진 기한 내에 부적합 해소 정보 및 증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증 업무를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보낸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개월 이내 (신청자 준비 결과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3단계	MSO	식별 및 샘플 채취 과정에서 미비점이 확인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미비점이 해소된 경우, 선정된 샘플을 확인서와 함께 인정받은 시험소에 송부한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시험소	선정된 샘플을 표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획득한 시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MSO에 제출한다.	시험 소요 기간에 따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MSO	생산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다(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생산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해소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확인된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중단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미비점 해소 정보·증빙이 제출된 경우, 업무 중단 또는 계속을 결정한다.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증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1개월 이내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신청자	생산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을 시정하고 해당 정보를 증빙 문서와 함께 MSO에 제출한다.	1개월 이내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계	주체	조치	이행 기한
4단계	MSO	식별 및 샘플 채취 확인서, 제품 설계·유형 조사 결론, 시험 보고서, 생산 평가 확인서 및 제출된 문서 일체에 근거하여 적합성 인증서 발급 결정을 내린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시험 및 측정 중 전체 또는 일부 손상된 제품의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와 손상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긍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하고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한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2

적합성 인증서를 통한 제품 적합성 확인

표

체계 번호	인정받은 시험소의 시험 또는 그 밖의 적합성 평가 증거	생산 여건의 평가 또는 품질시스템의 평가	인증 제품에 대한 검사 감독 (품질시스템)
1.	제품 유형의 시험	-	-
2.	제품 유형의 시험	-	판매(소비자)에서 채취한 샘플의 시험
3.	제품 유형의 시험	생산 평가	제조사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시험
4.	제품 유형의 시험	생산 평가	판매(소비자) 및 생산에서 채취한 샘플의 시험
5.	제품 유형의 시험	생산 평가 또는 품질시스 템의 평가	샘플 시험 및 품질시스템 평가(생 산 조사)
6.	-	품질시스템의 평가	경영시스템 상태의 평가
7.	제품 배치의 시험	-	-
8.	각 샘플의 시험	-	-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3

(인증기관의 명칭)

(인증기관의 주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증 국가 시스템에서의 제품 인증 신청서

(신청자의 명칭(제조자, 공급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성명))

(신청자의 주소)

상기 신청자

을(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대표자의 성명)

(제품의 명칭, 유형, TIF TN 코드, 연속 또는 배치 생산, 각 제품(단일 생산의 경우)에 관한 정보)

는

에 근거하여 제조되며,

(제조자 문서의 명칭)

의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규범 문서의 명칭 및 번호)

이에 해당 제품이 명시된 문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절차를 아래 체계에 근거하여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증 체계 번호)

추가 정보

(결론 및 그 밖의 문서 보유 여부를 기재)

신청자

(전자서명)

(성명)

일자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4

“승인함”

(제품 인증기관의 명칭)

제품 인증기관장

(서명)

(성명)

20__년 __월 __일

(제품 인증기관의 주소)

인장

인증 신청에 관한 결정

20 __년 __월 __일 제__호

의 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조사, 공급자의 명칭)

(제품 명칭, TIF TN 코드)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인증 체계

(체계 번호)

2. 인증 시험 수행 기관

(시험소의 명칭)

(시험소의 주소)

3. 인증 수행의 근거가 되는 요구사항

(규범 문서의 명칭 및 표시)

4. 생산 평가 수행 기업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 평가 유형)

5. 업무 비용 지급 방식

(업무 계약, 요율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6. 인증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문서

(필수 제출 문서)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5

(앞면)

샘플의 식별 및 선정 확인서

20 __년 __월 __일

제조사(신청자)의 명칭		
샘플이 채취된 조직의 명칭 및 주소		
제품 유형의 명칭		
측정 단위		
배치 규모		
배치 외관 검사 결과		
	(포장, 라벨링 상태)	
제조일자		
채취한 샘플 수		
	(단위 포장 상태)	
(시험용)		
(대조 샘플용)		
샘플 채취 목적: 규범 문서에서 정해진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의 안전 지표 시험용		
샘플 채취 장소 및 일자		
서명:		
제조사측		
(신청자측)	(서명)	(성명)
제품 인증기관		
	(서명)	(성명)
세관 초소 검사관		
	(서명)	(성명)
	(뒷면)	
제품 식별:		
명칭 (상표, 모델, 유형, 등급(있는 경우))		
제조사 (국가 및 기업)		

포장 및 라벨링 정보

용도 / 목적

주요 특성

보관 조건

제조일자

보관 기간

추가 정보 (있는 경우)

서명:

제품 인증기관

(서명)

(성명)

제조자 (신청자)

(서명)

(성명)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6

제품 장부 제외(반환) 확인서

20__년 __월 __일

(법인 및 개인의 명칭)

(신청서 일자 및 번호)

본 확인서는 20__년 __월 __일자 제_____호 샘플 선정 확인서에 따라 선정된 제품 샘플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중 전체 손상됨;

시험 중 파괴되지 않았거나 일부 손상되어 신청자에게 반환됨.

제조자 (신청자)

(서명)

(성명)

제품 인증기관

(서명)

(성명)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품 인증기관의 명칭)

(제품 인증기관의 주소)

“승인함”

인증기관장

(서명)

(성명)

20__년__월__일

인장

인증 결과에 관한 결정

20__년__월__일 제__호

- 1. 인증 대상 제품의 시험 보고서 분석.
- 2. 생산 평가 결론(인증 체계에 규정된 경우).
- 3. 문서의 완전성에 근거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 / 거부(해당 사항에 밑줄 표시)

(제품 명칭)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거부 사유
전문가
(서명) (성명)

표준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증 국가 시스템

(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국가 등록부 등록번호)

적합성 인증서

20__년__월__일 제__호

(국가 적합성 마크) 국가 등록부에 등록됨

유효기간

20__년__월__일까지

TIF TN 코드

(참고용)

(조직 명칭, 제조국)

본 인증서는 적절하게 식별된 다음 제품이

(명칭, 유형, 종류, 모델)

(수량 또는 연속 생산 여부)

기술규제 분야 규범 문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인증 체계:

신청자 (제조자, 판매자):

(해당 사항에 밑줄 표시)

(실제 주소 및 법적 주소)

본 인증서는 다음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

a) 문서

b) 샘플 시험

v) 생산 검사 확인서

정기적으로 검사 관리를 수행한다.

특기사항:

적합성 마크 부착

제품 인증기관장

(전자서명)

(성명)

전문가

(전자서명)

(성명)

2. '인증 절차 및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2011년 4월 28일자 내각

결의 제122호의 [제2항](#) 및 해당 결의로 승인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 적합성에 대한 제조자 선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3.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대상 목록의 승인에 관한’ 2021년 1월 30일자 내각 [결의](#) 제43호에서:

a) 제2항의 [5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무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 4에 따라 승인한다”.

b) [부속서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30일자 내각 결의 제43호의
부속서 4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인증 대상 제품		
1.	묘목(포도 식재 재료, 묘목, 종자 및 핵과 과수, 품종 장미 및 라일락, 정유용 장미, 정유용 제라늄)	0601 — 0602
2.	식재용으로만 사용되는 채소 및 일부 식용 뿌리채소·구근채소·괴경채소	0701, 0703, 0712 90 110 0, 0713
3.	향신료(종자용)	0909 — 0910
4.	곡물(모든 종류, 종자용 및 상품용 곡물)	1001 — 1008
5.	제분·도정 산업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 글루텐.	1101 00 — 1109 00 000 0*
6.	식재용으로만 사용되는 과일 종자 및 그 밖의 종자	1201, 1202, 1204 — 1207, 1209
7.	주류	2203 — 2208
8.	담배 및 공업용 담배 대체 제품	2401 — 2404
9.	규조토, 시멘트	2512 00 000 0, 2523
10.	광물성 연료, 석유 및 그 종류 제품;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	2701 — 2703 00 000 0, 2705 00 000 0, 2707, 2710 — 2712 (2711 12 940 0 제외), 2714 10 000 0, 2715 00 000 0
11.	암모늄하이드록사이드, 암모늄클로라이드, 포타슘나이트레이트, 나	2814 20 000 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이트레이트, 다이칼슘포스페이트, 칼슘포스페이트, 설페이트, 클로라이드, 포타슘포스페이트, 보릭애씨드, 보론옥사이드, 몰리브데이트	2827 10 000 0 2827 39 850 0, 2834 29 800 0, 2835 24 000 0, 2835 25 000 0, 2835 26 000 0, 2833 29 800 0, 2810호 중, 2827호 중, 2833호 중, 2840호 중, 2841호 70
12.	비고리형 및 고리형 탄화수소(연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에 한함)	2901 — 2902 (2901 10 000 1 제외)
13.	의약품(인체 및 동물에서 채취되어 이식용으로 사용되는 분비선 및 장기는 제외)	3001 — 3006 (3002 90 100 0, 3002 90 300 0, 3006 50 000 0, 3006 92 000 0 제외)
14.	무기질 비료	3102-3105
15.	인체 및 동물용 정유 및 레지노이드; 인체 및 동물용 향수·화장품 또는 화장용 제품; 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살균 및 살충·진드기 제거 제품	3301 — 3307
16.	성냥	3605 00 000 0
17.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3808
18.	내화 시멘트	3816 00 000 0
19.	유압 브레이크액 및 유압 전동장치용 기타 조제액, 부동액 및 결빙 방지 조제액	3819 00 000 0, 3820 00 000 0
20.	식품용 식탁 및 주방 식기	3924 10 000 0
21.	고무 튜브, 위생 또는 의약 제품(젖꼭지, 수술용 장갑 포함), 수영장용 매트; 철도 차량의 공기제동 시스템용 밀폐 고무 제품(다이어프램, 커프, 칼라, 밸브 밀폐재, 패킹, 부싱)	4013, 4014, 4015 11 000 0, 4016 91 000 0, 4016 93 000 8
22.	천연 가죽으로 만든 소방 구조용 벨트	4203 30 000 0
23.	인조 모피 및 그 제품	4304 00 000 0
24.	철도 또는 트램 선로용 목재 침목	4406
25.	위생용 종이 제품, 아황산 포장지, 여과 및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및 판지, 내유성 종이 및 양피지, 식품용 종이 용기 및 쟁반, 달걀	4803 00, 4805 3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포장용 상자.	4805 40 000 0, 4806, 4823 61 000 0, 4823 70 100 0
26.	인쇄 도서, 소책자, 전단 및 유사 인쇄물, 어린이용 그림책, 데생책 또는 색칠책, 신문, 잡지 및 그 밖의 정기 간행물, 도해 유무를 불문하고 광고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	4901 10 000 0 — 4901 99 000 0, 4903 00 000 0, 4902 10 000 0 — 4902 90 000 0
27.	견사 또는 견사 부산물로 만든 직물	5007
28.	소모사 견직물, 동물의 가는 털 또는 굵은 털의 소모사로 만든 직물	5111, 5112, 5113 00 000 0
29.	아마 섬유 직물; 황마 또는 5303호의 그 밖의 인피 섬유; 그 밖의 식물성 섬유로 만든 직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9 — 5311
30.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5404호 재료로 제조된 직물 포함); 인조 필라멘트사 직물(5405호 재료로 제조된 직물 포함).	5407 — 5408
31.	중량의 85% 이상이 해당 섬유로 구성된 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해당 섬유의 중량이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섬유와 혼방되며 표면 밀도가 170 g/m ² 이하인 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해당 섬유의 중량이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섬유와 혼방되며 표면 밀도가 170 g/m ² 를 초과하는 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그 밖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인조 스테이플 섬유 직물	5512 — 5516
32.	위생 목적 및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섬유 재료 및 제품으로 만든 워딩.	5601 21-5601 22
33.	방직 또는 비방직 부직포, 도포 유무 및 가공 유무를 불문함.	5603
34.	직조 카펫 및 그 밖의 직물제 바닥 깔개(완제품 여부 불문); 카펫 직물 및 그 밖의 바닥용 직물 깔개(터프트 또는 플록 가공이 없는 것, 완제품 여부 불문, '켈렘(kilim)'·'슈맥(sumax)'·'카라마니(kermani)' 및 수제 유사 카펫 포함); 카펫 및 그 밖의 바닥용 터프트 직물 깔개(완제품 여부 불문); 카펫 및 그 밖의 펠트제 바닥용 직물 깔개(터프트 또는 플록 가공이 없는 것, 완제품 여부 불문); 카펫 및 그 밖의 직물제 바닥 깔개(완제품 여부 불문)	5701 — 5705
35.	파일 직물 및 셔닐사 직물; 타월지 및 유사 파일 직물, 터프트 직물 재료; 편조 직물; 털 및 그 밖의 망상 직물(직조 직물 제외); 묶음 형태의 망·리본 또는 개별 무늬; 벨기에·오튀송·보베식 수직 태피스 트리 및 유사 태피스 트리, 자수(예: 이라키·십자수), 완제품 여부 불문; 가는 비직조 직물, 접착 결합; 금속사 직물 및 5605호의 의류에 사용되는 금속 가공사로서 가구용 직물 또는 유사 목적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부드러운 층을 봉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여러 직물 층으로 이루어진 누비 직물	5801 — 5803, 5809 00 000 0, 5811 00 000 0
36.	플라스틱이 함침·도포되거나 적층된 섬유 재료; 고무 처리된 섬유	5903,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재료	5906
37.	리놀륨, 섬유 재료를 기반으로 한 바닥 깔개	5904
38.	기계 또는 수편 파일 편물(긴 파일 편물 및 보풀 편물 포함); 폭 30cm 이하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5% 이상 함유한 기계 또는 수편 편물; 폭 30cm 이하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5% 이상 함유한 기계 또는 수편 편물; 경편 편물(갈룬 제조용 편직기로 짠 것 포함); 그 밖의 기계 또는 수편 편물	6001, 6004 — 6006
39.	남성용 또는 남아용 셔츠(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남성용 또는 남아용 팬츠·트렁크·잠옷·파자마·목욕가운·실내가운 및 유사 제품(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여성용 또는 여아용 콤비네이션·페티코트·팬티·판탈롱·잠옷·파자마·페노아르·목욕가운·실내가운 및 유사 제품(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러닝셔츠·소매 있는 셔츠 및 그 밖의 내의(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유아용 의류 및 그 부속품(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팬티스타킹·스타킹·하이삭스·양말 및 그 밖의 양말류, 차등 압박 압축 양말류(예: 정맥류 환자용) 및 밑창 없는 신발(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6105 — 6109, 6111, 6115
40.	남성용 또는 남아용 셔츠; 여성용 또는 여아용 블라우스·블라우스셔츠 및 블라우즈; 남성용 또는 남아용 러닝셔츠 및 그 밖의 내의·팬츠·트렁크·잠옷·파자마·목욕가운·실내가운 및 유사 제품; 여성용 및 여아용 러닝셔츠 및 그 밖의 내의·콤비네이션·페티코트·팬티·판탈롱·잠옷·파자마·페노아르·목욕가운·실내가운 및 유사 제품; 유아용 의류 및 그 부속품; 브래지어·거들·코르셋·서스펜더·끈 및 유사 제품과 그 기계·수편 편물 또는 비편물 부분품;	6205 — 6209, 6212
41.	침대보·침구·식탁·화장실 및 주방용 천; 소방관용 직물제 구조용 벨트	6302, 6305, 6307 20 000 0
42.	소방용 헬멧 및 투구;	6506 10
43.	신발 및 유사 제품(완성 신발에 한함)	6401 — 6405
44.	콘크리트 및 석면시멘트 제품	6810
45.	벽돌, 블록, 타일 및 유사 내화 도자 제품; 건축용 벽돌, 바닥용 블록, 실험실·화학용 또는 그 밖의 기술용 도자 제품.	6902, 6904, 6909
46.	자동차용 안전유리, 식품 및 의약품 포장용 유리 용기, 식탁 및 주방 식기, 실험실·위생 및 의약품 유리 용기, 거울	7003 12 — 7003 30 000 0, 7004 20 — 7004 90, 7005 10 — 7005 30 000 0, 7006 00 100 0, 7006 00 900 0, 7007, 7008 00, 7009 91 000 0, 7009 92 000 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7010, 7013, 7016 10 — 7016 90 700 9, 7017, 7019
47.	폭 600mm 미만 또는 이상의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열간 압연·냉간압연(냉간압착), 도금 유무, 갈바닉 또는 그 밖의 도금 유무 불문); 철 또는 비합금강의 코일 열간압연 봉; 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만으로 제조되고 이후 가공이 없는 철 또는 비합금강 봉; 철 또는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철 또는 비합금강 형강(채널·I형강 또는 광폭 플랜지 I형강·앵글·T형강·특수 형강·S/Z/오메가형 또는 비접합 형강·형강(리브) 판); 철 또는 비합금강 선; 잉곳 또는 그 밖의 1차 형태의 내식강; 내식강 반제품; 폭 600mm 미만 또는 이상의 내식강 평판압연제품; 내식강의 코일 열간압연 봉; 그 밖의 내식강 봉; 내식강 형강 및 특수 형강; 내식강 선; 잉곳 또는 그 밖의 1차 형태의 그 밖의 합금강 및 그 반제품; 폭 600mm 미만 또는 이상의 그 밖의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그 밖의 합금강의 코일 열간압연 봉; 그 밖의 합금강 봉; 그 밖의 합금강 형강 및 특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천공 작업용 중공 봉; 그 밖의 합금강 선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48.	철강제 시트파일 구조물(천공·타공 유무, 일체형 또는 조립 요소로 제조된 것); 철강제 용접 형강 및 특수 형강; 가스 및 연료용 철강제 탱크·시스톤·용기, 가스레인지, 고체 및 액체 연료용 난방로(튀김기·화로), 조리 및 취식용 식탁·주방 식기, 비전기식 가열 중앙난방용 라디에이터 및 철강제 그 부분품, 철도 또는 트램 선로용 레일·모든 종류의 레일 및 1520mm(신규) 궤간용 분기기 첨단레일에 사용되는 철강제 부분품·조립 분기기; 양두 레일 이음판; 개별 체결 받침; 코스틸 체결 받침; 개별 철도 레일 이음용 클립; 철도 레일용 스프링 레일 체결구; 궤도의 탄성 스프링 요소(이중권 와셔·접시 스프링·탄성 클립); 레일 이음용 클립 볼트 및 그 너트; 레일 이음용 연결 볼트 및 그 너트; 레일 이음용 설치 볼트 및 그 너트; 기관차 스프링	7301, 7302, 7309 00 — 7310, 7311 00, 7318, 7320, 7321 (7321 90 000 0 제외), 7322, 7323 (7323 10 000 0 제외), 7324 10 000 0 (민간항공 제외), 7324 21 000 0, 7324 29 000 0, 7324 90 000 0 (부분품 제외)
49.	비합금강을 압연·프레스 절단 방식으로 제조한, 양면 아연 도금 지붕용 금속 기와(골판형) 및 아연 도금 강판 압연제품으로 제조한 지붕용 부재(평판 압연제품으로 만든 지붕용 부속·액세서리·부자재)	7308 90 590 0
50.	단열 충전재가 있는 골판(리브형) 판으로 제조한 이중벽 패널 및 벽체용·지붕용 샌드위치 패널	7308 90 510 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51.	소방용 카라비너에 한함	7326 90 920 9, 7326 90 940 0, 7326 90 980 7
52.	소방장치용 연결 헤드	7609 00 000 0
53.	중앙난방용 알루미늄 및 바이메탈 라디에이터	7616 99 100 2 7616 99 100 3
54.	증기 보일러, 중앙난방 보일러, 가스발생기 또는 정화장치 유무를 불문한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 가스발생기 및 정화장치 유무를 불문한 유사 가스발생기; 동력장치, 액체 및 공기 펌프, 압축기, 송풍기 및 후드, 공기조화장치, 점화 버너, 냉장고 및 냉동고, 멸균기, 증류기(전기식 및 비전기식 가열의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기계·장치), 원심 건조기가 있는 원심분리기;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 및 정화용 장치, 식기세척기; 병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세척 또는 건조용 장치; 병·캔·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봉합·충전·마개 장치 및 그 표시 또는 라벨링용 장치; 병·캔·튜브 및 유사 용기를 캡 또는 뚜껑으로 밀폐하는 장치; 포장 또는 마개용 장치(열수축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장치); 음료 탄산화용 장치(중고품 및 선박·민간항공용은 제외), 증기식 또는 모래분사식 및 유사 장치; 권상 활차 및 권상기, 각종 기중기, 지게차, 화물 이동용 기계 및 장치, 농업·축산 및 조리용 장치와 기기, 직조기, 자동판매기	8402 11 000 — 8402 20000 9 8403 10, 8405 10 000 0, 8410 11 000 0, 8410 12 000 0, 8410 13 000 0, 8412 10 — 8412 80, 8413 11 000 0 — 8413 81 000 0 (8413 20 000 0, 8413 30 200 1, 8413 30 800 1 제외), 8414 10 — 8414 80 (8414 30 200 1, 8414 30 810 1, 8414 30 810 5, 8414 30 890 1, 8414 80 110 0, 8414 80 190 0 제외), 8415 20 — 8415 83 0000 (8415 20 000 1 제외), 8416 10 — 8416 20 800 0, 8418 30 — 8418 69 000, 8419 11 000 0 — 8419 89 (8419 81 200 0 8419 81 800 0 제외), 8421 11 000 0 — 8421 39, 8422 19 000 0 — 8422 40 000 8, 8425 (8425 39 000 2 제외), 8427, 8428 (8428 20 800 1, 8428 33 000 0, 8428 90 제외), 8429, 8430, 8433 11 — 8433 60 000 0 (8433 30 000 0, 8433 40 000, 8433 51 000, 8433 52 000 0, 8433 59 제외),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8434 10 000 0, 8434 20 000 0, 8435 10 000 0, 8436 10 0000 — 8436 80 900 0, 8437 10 000 0, 8437 80 000 0,
		8438 10 — 8438 80 990 0,
		8450 20 000 0,
		8452 10 900 0 — 8452 29 000 0 (엔진이 있는 기계에 한함)
		8471 30 000 0,
		8471 41 000 0,
		8471 49 000 0,
		8471 50 000 0
		8472 10 000 0,
		8476 21 000 0 — 8476 89 000 0,
		8481 10 050 0 — 8481 80 990 7
55.	금전등록기(인쇄장치 및 금전출납 장치가 내장된 전자 계산기)	8470 21 000 0,
		8470 50 000
56.	전기 기계 및 장치; 전동기(민간항공용은 제외) 및 발전기, 전기발전 장치 및 회전식 전기 변환기, 교류 변압기, 축전지, 노 및 산업용 챔버, 녹음 및 음성 재생 장치,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 재생·녹화 장치, 전구 및 진공관, 백열램프(12W 초과), 단말(터미널) 장비, 또한 통신망 장비에서 합법적 감청 시스템의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단, 절연 부속, 통신 기술 수단; 정보의 기술적·암호적 보호 수단,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수판 및 전자담배 및 유사 개인용 전기 기화기.	8501 — 8502, (8501 20 000 1, 8501 32 000 1, 8501 33 000 1, 8501 40 200 1, 8501 40 800 1, 8501 52 900 1 제외), 8504 10 — 8504 50 950 0 (8504 40 300 03, 8504 40 300 4 제외), 8507 10 — 8507 80 000 0 (8507 10 200 1, 8507 10 200 2, 8507 10 800 1 제외), 8514 10 — 8514 40 000 0, 8515 11 000 0 — 8515 80 900 0, 8516 31 — 8516 80 800 0, 8517 11 000 0 — 8517 69 900 0, 8518 21 000 0, 8518 22 000 0, 8518 29 960 0, 8519 20 — 8519 81 110 0, 8521, 8525 50 000 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8526 — 8528 73 000 0 (8526 10 000 1, 8528 42 100 0 8528 52 100 0, 8528 52 300 0 8528 52 900 0, 8528 59 100 0 8528 59 900 0, 8528 71 110 0 8528 71 150 0, 8528 71 190 0 8528 71 910 0, 8528 71 990 0 8528 72 100 0, 8528 72 200 1 8528 72 200 9, 8528 72 300 1 8528 72 300 2, 8528 72 300 3 8528 72 300 9, 8528 72 400 0 8528 72 600 0, 8528 72 800 0 제외), 8530 10 000 0, 8530 80 000 0, 8531 10 — 8531 10 950 0, 8531 20 200 0, 8535 — 8537, 8539 10 000 — 8539 52 900 0 (8539 10 000 1, 8539 21 300 1, 8539 29 300 1 제외), 8540 11 000 — 8540 89 000 0, 8543 40 000 0, 8546
57.	태양광 패널	8501 71 000 0, 8501 72 000 0 8501 80 000 0, 8541 42 000 0, 8541 43 000 0
58.	기관차 및 동력 객차 편성; 밸러스트 청소 기계; 밸러스트 도상 성형·정리 및 재분배용 기계; 레일 청소 및 침목 칸의 밸러스트 절삭용 기계; 두 선로 사이의 밸러스트 절삭용 기계; 레일 용접 기계; 침목 교체용 기계 및 기구; 레일 체결구 체결 및 윤활용 기계; 레일 연마 기계 및 열차; 동차·궤도자전거·모터카; 기관차 견인 객차(신규)(우편·수하물 및 수하물차 포함); 밀폐형(신규) 화차(범용); 곡물·무기질 비료 및 그 원료·인광석 정광·자동차·축우·시멘트·입상 카본블랙·밀가루·종이·입상 폴리머·공업용 카본·냉간압연강 운송용; 반밀폐형 범용 화차; 가열된 괴물 및 소결광·역청·코크스·산적 야금 화물·토탄·덤프차 및 호퍼 디스펜서 운송용; 탱크차(석유·휘발유용); 8축 석유·휘발유용; 점성 석유제품 운송용; 산(황산·과인산·아세트산·발연황산) 운송용 4축 및 8축 탱크차; 정제 황산 운송용; 멜란지 운송용; 주정 및 식품(주정·와인 원료·과채 주스·우유) 운송용; 프로판·암모니아·탄화수소 가스 운송용; 염소·에틸액·아세트알데히드·염화비닐·펜탄·황린 운송용; 소다회·폴리염화비닐·카프로락탐·액상 피치·셀파놀 페이스트·	8601 10 000 0, 8601 20 000 0, 8602 10 000 0 8602 90 000 0 8603 10, 8603 90 000 0, 8604 00 000 0, 8605 00 000, 8606 10 000 0, 8606 30 000 0, 8606 91 100 0, 8606 91 800 0, 8606 92 000 0, 8606 99 000 0, 8607 11 000 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황·용융황 운송용; 벤젠·독성 화학물질·메탄올 운송용; 시멘트 운송용; 중량 분말 화물 운송용; 플랫폼(범용); 대형 화물 컨테이너·대형 톤수 컨테이너 및 차륜 장비 운송용; 2층 자동차 운송용; 코일강 운송용; 장척물 운송용; 목재·판재 운송용; 범용 VO-118형 금속 스텐션 및 그 부속; 대차; 윤축; 일체압연 차륜; 차축;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유압식 진동 감쇠기; 스프링 상부 빔; 측면 프레임; 대차 프레임; 공기 분배기 및 전기 공기 분배기(조립 상태); 연결 호스; 트라이앵글; 제동 슈·제동 라이닝; 제동 실린더; 자동연결기(조립 상태)(자동연결기 본체·완충장치·요크·전후 받침·쇄기); 중형 톤수 컨테이너(신규)(범용·특수, 위험물 운송용 포함); 디젤기관차 및 디젤동차 주구동장치 카르단 축; 기관차 윤축; 기관차 차축; 발전기 구동장치 카르단 축; 분기기 제어 잠금장치; 험프 감속기	8607 12 000 0, 8607 19 100 9, 8607 19 900 0, 8607 21, 8607 29 000 0, 8607 30 000 0, 8607 91 100 0, 8607 91 900 0, 8607 99 100 0, 8607 99 800 0, 8608 00 000 1, 8608 00 000 9, 8609 00
59.	지상 운송 수단(트랙터, 사람 및 화물 운송용 자동차, 자전거, 모터 사이클, 모페드, 사이드카,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및 그 부품.	8701 — 8706 (8701 91 500 0, 8701 92 500 0, 8701 93 500 0, 8701 94 500 0, 8701 95 500 0, 8702 10 19, 8702 10 99, 8702 20 19, 8702 20 99, 8702 30 19, 8702 30 99, 8702 90 19, 8702 90 39, 8703 21 90, 8703 22 90, 8703 23 90, 8703 24 90, 8703 31 90, 8703 32 90, 8703 33 90, 8703 40 20, 8703 40 40, 8703 40 60, 8703 40 80, 8703 50 20, 8703 50 40, 8703 50 60, 8703 60 20, 8703 60 40, 8703 60 60, 8703 60 80, 8703 70 20, 8703 70 40, 8703 70 60, 8704 21 380, 8704 21 980, 8704 22 980, 8704 23 980, 8704 31 380, 8704 31 980, 8704 32 980 제외), 8708 10 (부품 제외), 8708 21, 8708 30 (부품 제외), 8708 70 (부품 제외), 8708 94 350 9, 8709 11 — 8709 19 900 0, 8711 — 8713, 8715 00 100 0, 8716 10 — 8716 80 000 0 (8716 39 800 제외)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60.	광학·정밀·의료 또는 외과 및 실험실 기구와 장치(소모품 및 관리 자재의 부품은 제외); 측정 및 검사 장치, 고도계 및 스포츠 줄자, 자동 조절 및 제어용 장치, 측지 또는 지형(사진측량 포함)·수로·해양·수문·기상 또는 지구물리 장치 및 기구(나침반 제외); 거리 측정 기, 감도 0.05g 이상의 저울,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및 게이지, 호흡 기구 및 장치, 주요 기능이 디지털 복사이며 원본을 스캔하여 정전식으로 복사본을 인쇄하는 기계	9008 50 000 0 (슬라이드용 프로젝터에 한함), 9015 10 — 9015 80 990 0, 9016 00 100 0, 9017 30 000 0, 9017 80 100 0, 9018 — 9020 00 000 0 (9018 32 — 9018 49 9000 제외), 9022 (9022 90 000 0 제외), 9024 10 — 9024 80 900 0, 9025 11 — 9025 80 800 0, 9026 10 — 9026 80800 0, 9027 (9027 90 500 0, 9027 90 800 0 제외), 9028 10 000 0 — 9028 30 900 0, 9029 10 000 — 9029 20 900 0, 9030 10 000 0 — 9030 89 900 9, 9031 10 000 0 — 9031 80 980 0, 9032 10 — 9032 89 000
61.	총포류 업무용 무기; 시민용 무기: 권총 및 피스톨, 기계식 가스 분사기, 에어로졸 및 그 밖의 장치, 최루 또는 자극 효과 물질을 충전한 가스통, 전기충격 장치 및 스파크 방전 신호용 무기; 탄약: 총포류 업무용 무기용 탄; 가스 및 신호용 무기용 공포탄, 가스 무기용 가스탄; 무기 및 탄약과 외형이 유사한 모형 및 마케트; 구조상 총열 에너지가 0.5J 초과 3J 이하인 공기총에 가까운 것; 구조가 무기에 가까운 스포츠 용품; 산업용 및 특수 장치용 탄; 레이저 및 오락용 석궁 및 활; 수중 사냥용 총 및 작살총; 페인트볼 게임용 마커; 검·사브르·레이피어·창(피크) 및 유사 무기, 위 무기의 부분품, 칼집 및 그 덮개	9302 00 000 0, 9303, 9304 00 000 0, 9306, 9307 00 000 0,
62.	완구	9503 00
63.	게임·체커·체스; 회전목마·그네 및 그 밖의 놀이기구	9504 90 800 9, 9508 21 — 9508 29
64.	보온병 및 진공 용기	9617 00 000
65.	연습용 마네킹, 여성용 위생 패드 및 탐폰, 유아용 기저귀 및 그 밖의 모든 재료의 유사 제품	9618 00 000 0, 9619 00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제품		
66.	부싯돌, 대리석, 화강암, 자갈, 석면	2506 10 000 0, 2508 10 000 0, 2509 00 000 0, 2515, 2516, 2517 10 100 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2517 10 200 0, 2520, 2524, 2526 20 000 0
67.	소화 분말(소듐바이카보네이트 기반), 소듐바이카보네이트	2836 30 000 0
68.	항생제, 식물 기원 설펜아마이드, 프로비타민, 비타민, 호르몬, 글리코사이드 및 알칼로이드	2935 — 2939, 2941
69.	페인트 및 바니시(방화용에 한함)	3209 90 000 0
70.	비누, 유기 계면활성제, 세정제, 윤활제, 인조 및 조제 왁스, 청소 또는 광택용 조제품, 양초 및 유사 제품, 모형 제작용 페이스트, 점토(플라스티신), '치과용 왁스' 및 석고 기반 치과용 조제품	3401 — 3407 00 000 0
71.	카제인·카제이네이트 및 그 밖의 카제인 제품; 알부민·알부미네이트 및 그 밖의 알부민 제품; 젤라틴 및 그 밖의 젤라틴 제품; 펩톤 및 그 제품; 단백질 물질 및 그 밖의 그 제품; 덱스트린 및 그 밖의 변성 전분; 효소; 효소 제제.	3501 10 900 0, 3502 11 900 0, 3502 19 900 0, 3503 00 100, 3504 00, 3505 10 900 0, 3507
72.	폭발물; 총격식 또는 기폭식 뇌관; 도화선; 전기뇌관; 화공품;	3601 00 000 0, 3602 00 000 0, 3604
73.	소화기용 조제품 및 충전제	3813 00 000 0
74.	플라스틱 제품(관·튜브·피팅·바닥 깔개·판·시트·필름·위생도기 제품·식품에 접촉하는 포장·식품용 식탁 및 주방 식기)	3917 — 3923 30 909 0, 3923 50
75.	관·튜브·호스·타이어 및 공기 타이어.	4009, 4011
76.	소(물소 포함) 또는 말과 동물의 가죽으로 무두질한 가죽 또는 크리스트(털 없이, 분할 유무 불문, 다만 추가 가공 없음); 양가죽 또는 새끼양 가죽으로 무두질한 가죽 또는 크리스트(털 없이, 분할 유무 불문, 추가 가공 없음); 그 밖의 동물 가죽으로 무두질한 가죽 또는 크리스트(털 없이, 분할 유무 불문, 추가 가공 없음); 소(물소 포함) 또는 말과 동물의 가죽 또는 가죽 표피 형태로 추가 가공된 가죽(양피지 처리 소가죽 포함, 털 없이, 분할 유무 불문)의 크리스트; 양가죽 또는 가죽 표피 형태로 추가 가공된 크리스트(양가죽 또는 새끼양 가죽으로 만든 가죽 포함, 털 없이, 분할 유무 불문); 가죽 또는 가죽 표피 형태로 재가공된(양피지 처리 포함) 그 밖의 동물 가죽(털 없이, 분할 유무 불문); 새미(혼합 새미 포함); 에나멜 가죽 및 라미네이트 에나멜 가죽; 금속화 가죽; 천연 가죽 기반 합성 가죽 또는 판·시트·띠 또는 리본, 두루마리 형태 여부 불문의 가죽 섬유	4104 11 100 0 — 4114 20 000 0
77.	여행용 트렁크·여행가방·화장도구 또는 개인위생 세트용 가방·서류	4201 00 000 0,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 및 여행용 자루, 안경·쌍안경·사진기·악기·총·권총집 및 유사 제품용 케이스;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보온가방·화장도구 또는 개인위생 세트용 파우치·배낭·여성용 및 남성용 가방·장바구니·지갑·동전지갑·지도·담배 케이스·담배쌈지용 케이스·공구가방·스포츠가방·병 상자·보석함·분첩·절단 또는 유사 제품용 천연 또는 합성 가죽 케이스; 가죽제 마구 및 모든 동물용 마구(가슴걸이·고삐·무릎띠·재갈·뒷개·조립 자루·개 뒷개 및 유사 제품 포함), 임의 재료로 제작; 의류 품목 및 의류 관련 천연 가죽 또는 합성 가죽	4202, 4203
78.	철도 또는 트램 선로용 목재 침목; 분기기용 목재 각재; 바닥·벽 및 천장용 목섬유 깔개 및 수지(레진)가 함침되지 않았거나 함침된 유사 판, 접착 합판, 합판 피복 및 목재 층(또는 유사 재료)으로 만든 패널	4410, 4411 12 900 0 4411 13 900 0 4411 14 900 0 4411 92 900 0 4411 93 900 0 4411 94 900 0 4412
79.	식탁 및 주방 관련 목재 통·작은 통·큰 통·작은 들통 및 그 밖의 통 제품(식품과 접촉하는 것)	4416 00 000 0, 4419
80.	천연 코르크 제품	4503 10
81.	종이로 만든 필터 블록·판, 걸러지, 벽지, 위생용지, 판지·상자·자루·가방 및 그 밖의 포장 용기, 필터용 종이 및 판지, 종이제 주방 식기	4812 00 000 0, 4813, 4814, 4818, 4819, 4823 20 000 4823 69
82.	다이어리; 노트	4820 10 500 0, 4820 20 000 0
83.	면섬유, 면직물	5201 00, 5203 00 000 0, 5208 — 5212
84.	로프(소방관 구조용으로만 사용되는 것)	5607 49 190 0 — 5607 90 900 0
85.	소방용 압력 호스	5909 00 100 0, 5909 00 900 0
86.	남성용 또는 남아용 외투·짧은 외투·망토·레인코트·재킷(스키복 포함)·바람막이·방풍복 및 유사 제품(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여성용 또는 여아용 외투·여성용 짧은 망토·레인코트·재킷(스키복 포함)·바람막이·방풍복 및 유사 제품(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남성용 또는 남아용 정장·세트·재킷·블레이저·바지·가슴받이와 어깨끈이 있는 작업복·반바지 및 쇼트(수영복 제외)(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여	6101, 6102, 6103, 6104, 6110, 6112,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성용 또는 여아용 정장·세트·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바지·가슴받이와 어깨끈이 있는 작업복·반바지 및 쇼트(수영복 제외)(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스웨터·폴오버·카디건·조끼 및 유사 제품(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스포츠·스키 및 수영복(기계 또는 수편 편물 제품); 5903·5906 또는 5907호의 기계 또는 수편 편물 직물로 만든 의류 품목; 기계 또는 수편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 품목; 기계 또는 수편 편물로 만든 장갑·병어리장갑; 기계 또는 수편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 부속품; 기계 또는 수편 편물로 만든 의류 부분품 또는 의류 부속품	6113, 6114, 6116
87.	남성용 또는 남아용 외투·짧은 외투·케이프·레인코트·재킷(스키복 포함)·바람막이·방풍복 및 유사 제품; 여성용 또는 여아용 외투·짧은 외투·케이프·레인코트·재킷(스키복 포함)·바람막이·방풍복 및 유사 제품; 남성용 또는 남아용 정장·세트·재킷·블레이저·바지·가슴받이와 어깨끈이 있는 작업복·반바지 및 쇼트(수영복 제외); 여성용 또는 여아용 정장·세트·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바지·가슴받이와 어깨끈이 있는 작업복·반바지 및 쇼트(수영복 제외); 5602·5603·5903·5906 또는 5907호 재료로 제조된 의류 품목; 스포츠·스키 및 수영복; 그 밖의 의류 품목; 스카프; 숄·머플러·머플러형 스카프·만틸라·얇은 투명 직물 및 유사 제품; 넥타이·나비넥타이 및 목수건·장갑 및 병어리장갑; 그 밖의 의류 부속품; 의류 부분품 또는 의류 부속품	6201, 6202, 6203, 6204, 6210, 6211, 6213, 6214, 6215, 6216
88.	스포츠용 직물 깃발	6307 90 980 0
89.	소방용 헬멧 및 투구; 스포츠용 모자	6506 10 800 0 6506 91 000 0
90.	패널·판·무기질 결합재로 응집된 타일·석고판 및 패널·제동 라이닝·철근콘크리트 침목 및 철근콘크리트 분기기 각재	6808 00 000 0, 6809, 6811, 6813 20 000 0 (제동 슈 라이닝에 한함), 6813 81 000 0
91.	도자 제품(벽돌·블록·판·도자관·바닥 및 난로용 타일·욕조·세면대·변기·식탁 및 주방 식기)	6901 00 000 0, 6903, 6905, 6906 00 000 0, 6907, 6910, 6911, 6912 00
92.	정련 구리 및 가공하지 않은 구리 합금	7403
93.	구리 제품(조리용 가정용 기구, 조리 및 취식용 주방 식기)	7418

번호	제품 명칭	TIF TN 코드
94.	가공하지 않은 니켈; 니켈 판·시트·박판 또는 띠 및 니켈 박	7502, 7506
95.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봉 및 형재; 두께 0.2mm 초과 의 판·시트·박판 또는 띠	7601 10 000 0 — 7601 20 800 9, 7604 10 100 1 — 7604 29 900 0, 7606 11 100 0 — 7606 92 000 0
96.	조리 및 취식용 알루미늄 주방 제품, 위생도기 설비(주방 식기 세척 용 수세미, 청소 또는 광택용 패드, 장갑 및 유사 제품)	7615 — 7615 20 000 0
97.	가공하지 않은 아연	7901
98.	가공하지 않은 주석, 주석 봉·형재 및 선	8001, 8003 00 000 0
99.	가공하지 않은 마그네슘; 코발트 매트 및 코발트 야금의 그 밖의 중간 제품; 코발트 및 그 제품(폐기물 및 스크랩 포함); 가공하지 않 은 비스무트; 폐기물 및 스크랩; 카드뮴 및 그 제품(폐기물 및 스크 랩 포함); 티타늄 및 그 제품(폐기물 및 스크랩 포함)	8106 10 000 0, 8105 20 000 1 — 8105 90 000 9, 8107 20 000 0 — 8107 90 000 0, 8104 11 000 0 — 8104 19 000 0, 8108 8112 61 000 0-8112 69 000 9
100.	칼붙이 제품, 숟가락 및 포크, 주방 세트 및 그 밖의 주방 용품	8215
101.	내연기관, 터보제트, 수력터빈,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노 및 챔버, 제품 계량용 장치; 액체 또는 분말의 살포·분사 또는 산포용 기계 장치(수동 조작 유무 불문); 충전 유무를 불문한 소화기; 분무기 및 유사 장치; 증기식 또는 모래분사식 및 유사 장치; 농업 및 도로용 장비,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로 그 밖의 제품을 제조하는 장비, 복사 ·복제 기계, 화학섬유 재료의 압출·인발·텍스처 가공 또는 절단용 기 계, 섬유 준비 기계, 직조기.	8407 (8407 10 000, 8407 21, 8407 34 100 0, 8407 34 300, 8407 90 500 0 제외), 8417 10 000 0 — 8417 80 700 0, 8423 — 8424 89 000 9, 8432 10 000 0 — 8432 80 000 0, 8439 10 000 — 8439 30 000 0, 8443 31 — 8443 39 390 0 (8443 32 100 제외), 8444 00 — 8447 90 000 9
102.	램프용 소켓	8536 61
103.	지상 운송 수단용 차체.	8707 (8707 90 100 0, 8707 90 900 9 제외)
104.	광섬유, 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 의료용 바늘, 보청기.	9001 10, 9018 32 — 9018 49 900 0, 9021 40 000 0
105.	전시용으로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기기 및 모형(예: 교육 또는 전시용)	9023 00
106.	전자식 스톱워치 및 체스 시계에 한함	9102 99 000 0, 9106 90 000 0
107.	가구(개인 주문 제작 가구는 제외); 그 밖에 따로 명시되거나 분류 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 기구	9401 10 000 0 — 9401 80 000, 9403 10 — 9403 89 000 0, 9405 11 — 9405 69 000 9
108.	스포츠 용품	9506

비고: 다음 제품에는 의무적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품의 적합성 확인 신청을 받은 시점(신청서 접수일 이전 72 시간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정받은 인증기관이 없는 경우;

세관 구역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이전에 사용(소비)된 제품. 다만 운송 수단, 수렵 및 스포츠 무기와 그 탄약,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산업용 공기냉각 시스템, 태양광 패널, 모든 가스용 실린더 및 법령에서 정한 그 밖의 제품은 제외한다.

전시회·박람회용 견본, 전시품 및 광고물;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 및 조사용 샘플, 시험소 간 비교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샘플로 수입되는 제품;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샘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인증기관이 제품의 샘플이 시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서신)을 제출해야 한다.

과학연구 목적으로(연구 프로그램 수행 포함)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제품;

외국의 무상(인도주의적) 원조 및 국제 기술 지원으로 반입되는 제품;

자연재해·군사적 충돌·인위적 재해 및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

압수된 재산, 법원 판결(결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그 밖에 국가 수입으로 전환된 재산, 미납 세금, 미납 벌금 및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기관에 의하여 압류가 면제된 제품;

공화국 내에서 건설 및 그 밖의 도급 작업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식품 및 그 밖의 물품;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국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 수단의 정상적 운행에 필요한 제품;

국가 영토 내에서 관세 및 그 밖의 특권을 가진 국제기구, 외국의 외교 및 영사 사절단, 그 밖의 국제기구 산하 외국 사절단의 공식(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관세 당국은 3 일 이내에, 부처 간 정보 교환 수단을 통하여 본 규정에 따른 간소화된 절차로 반입된 물품의 수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각 산하 세무위원회 및 내각 산하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다.

본 목록의 제품에 관한 기술규정이 시행되면,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해당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한다.

제품의 제조자(생산자), 공급자 및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기술규정·표준 및 위생규범·규칙·위생기준(SanQvaM)에서 정한 의무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4. 2020년 5월 14일자 내각 결의 제283호로 승인된 대외무역거래 이행 감시 및 통제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a) 제4항 ‘b’호의 2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상품 표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시행 중인 상품(서비스) 표준, 특성에 따른 유형·모델·상표·등급·종류 및 국가 등록 증명서(적합성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관한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b) 부속서 2의 제1단계 ‘조치’ 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무역거래 단일 전자 정보시스템(TSOYAEAT)에 다음을 입력한다:

1. 체결된 대외무역 계약서와 송장, 국가 등록 증명서(적합성 인증서가 있는 경우);
2. 증권거래소(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서”.

5. 2017년 4월 25일자 내각 결의 제237호로 승인된 ‘유통에 제공되는 차륜 운송 수단의 안전에 관한 일반 기술규정’ 부속서 5의 러시아어 본문에서:

제10항의 “이러한 유형의 운송 수단의 유통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문구를

“차량 형식 승인서 또는 적합성 인증서에는 해당 운송 수단이 공공도로를 운행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20항을 다음 내용으로 신설한다.

“20. 운송 수단의 중량 변수가 본 부속서 제14항~제19항에 명시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형식 승인서 또는 적합성 인증서에는 해당 운송 수단이 공공도로를 운행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국가입법정보 데이터베이스, 2024.08.24., 제09/24/502/0644호; 2024.11.08., 제09/24/727/0905호; 2025.09.02., 제09/25/554/0797호; 2025.11.14., 제09/25/720/1052호; 2025.12.29., 제09/25/831/1227호)